

2020년 10월 4일 개정

2021년 1월 1일 발효

# 피아스 도핑방지규정



## 개요

### 서문

FIAS 집행위원회에서 FIAS는 개정된(2021년) 세계 반도핑 규정(이하 “규정”)을 승인하였다. 본 반도핑 규정은 FIAS가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고, 스포츠에서의 도핑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 및 시행된다.

본 반도핑 규칙은 스포츠 경기 조건을 규율하는 스포츠 규칙이다.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방식으로 반도핑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형사법 및 민사법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비록 비례성의 원칙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으나,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 적용되는 어떠한 국가적 요건이나 법적 기준에도 종속되거나 제한받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특정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검토할 때, 모든 법원, 중재 재판소 및 기타 심판 기관은 본 코드를 시행하는 이 반도핑 규정의 고유한 성격과, 이 규정이 공정한 스포츠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FIAS는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도핑 통제 또는 반도핑 교육의 어느 측면이든 FIAS가 위임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FIAS는 위임된 제3자가 해당 측면을 규정, 국제 기준 및 본 반도핑 규칙에 따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FIAS는 결과 관리의 관련 부분을 위임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FIAS가 도핑 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제3자에게 이행을 위임한 경우, 본 규칙에서 FIAS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위임받은 제3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FIAS는 위임된 모든 측면이 코드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전적인 책임을 항상 유지한다.

본 반도핑 규정에서 기울임체로 표기된 용어는 부록 1에 정의된 용어이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조항(Article)에 대한 언급은 본 반도핑 규정의 조항을 의미한다.

### 규정 및 FIAS 반도핑 규정의 근본적 근거

도핑 방지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을 둔다. 이 본질적 가치는 흔히 “스포츠 정신”이라 불리며, 각 선수의 타고난 재능을 헌신적으로 연마함으로써 인간의 탁월함을 윤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핑 방지 프로그램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의 사용 없이 인간의 탁월함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핑 프로그램은 규칙 존중, 다른 경쟁자 존중, 공정한 경쟁, 평등한 경기장, 그리고 세계에 대한 깨끗한 스포츠의 가치 측면에서 스포츠의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스포츠 정신은 인간의 정신, 신체, 마음을 기리는 것이다. 이는 올림픽 정신의 본질이며, 스포츠를 통해 발견되는 가치에 반영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건강
- 윤리, 페어플레이, 정직
- 규정에서 정한 선수 권리
- 탁월한 경기력
- 인성과 교육
- 즐거움과 기쁨
- 팀워크
- 헌신과 책임
- 규칙과 법률 존중
- 자신과 다른 참가자 존중
- 용기
- 공동체와 연대

스포츠 정신은 우리가 진실하게 경기하는 방식에 표현된다.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한다.

## **본 반도핑 규정의 적용 범위**

본 반도핑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a)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FIAS(국제 스키 연맹),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및 지정 직원, 위임 제3자 및 그 직원;
- (b)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각 국가 연맹,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및 지정 직원, 위임 제3자 및 그 직원;
- (c) 다음의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및 기타 인원:
  - i. FIAS, 국가 연맹, 또는 국가 연맹의 회원 또는 제휴 단체(클럽, 팀, 협회, 리그 포함)의 구성원인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 인력;
  - ii. FIAS, 국가 연맹 또는 국가 연맹의 회원/제휴 단체(클럽, 팀, 협회, 리그 포함)가 주최,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대회, 경기 및 기타 활동에 해당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 인원(개최 장소 불문);

- iii. 인증, 라이선스 또는 기타 계약적 합의 등을 통해 FIAS, 국가 연맹, 또는 국가 연맹의 회원 또는 제휴 단체(클럽, 팀, 협회, 리그 포함)의 도핑 방지 목적상 권한에 종속되는 기타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또는 기타 개인. 국제 대회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또는 기타 개인은 소속 국가 연맹이 발급한 FIAS 라이선스 또는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FIAS 라이선스 또는 인증은 FIAS가 제공하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또는 기타 개인에게만 발급된다. 미성년자의 모든 서류는 법적 보호자의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
- iv. FIAS 또는 그 국가 연맹의 정회원이 아니지만 특정 국제 대회 참가 자격을 원하는 선수. 이는 난민 선수에게만 적용된다.

상기 각 인원은 해당 스포츠 참여 또는 관여 조건으로서 본 반도핑 규칙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FIAS가 본 반도핑 규정을 집행하는 권한(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결과 포함) 및 제8조와 제13조에 명시된 심판 패널의 관할권(본 반도핑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건 및 항소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권한)에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1</sup>

본 반도핑 규정에 구속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기 전체 선수 풀 내에서, 다음 선수들은 본 반도핑 규정 목적상 국제급 선수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제급 선수에게 적용되는 본 반도핑 규정의 특정 조항(예: 검사, 치료용 예외(TUE), 소재지 보고, 결과 관리)이 해당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 (a) FIAS 국제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
- (b) 다음 국제 대회 중 하나에 참가하는 선수: FIAS 세계 선수권 대회, FIAS 대륙 선수권 대회, FIAS 월드컵 또는 FIAS 레벨 A 국제 대회

---

<sup>1</sup> 규정에서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인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당연히 시료 채취나 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규정 제2.5조(조작), 제2.7조(밀매), 제2.8조(투여), 제2.9조(공모), 제2.10조(금지된 관계), 제2.11조(보복) 위반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인물은 규정 제21.3조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직원이 규정에 구속되도록 요구할 의무는 적용 가능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FIAS는 본 반도핑 규정 제19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및 지정된 직원, 그리고 위임된 제3자 및 그 직원들과의 고용, 계약 또는 기타 형태의 모든 협정에 명시적 조항을 포함시켜 해당 인물들이 본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고, FIAS의 반도핑 사건 해결 권한에 동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 검사 대상자 풀 및 FIAS가 설립한 기타 풀에 포함된 선수

## 제 1 조      도핑의 정의

도핑이란 본 반도핑 규정 제2.1조부터 제2.11조까지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 2 조      도핑 규칙 위반

제2조의 목적은 도핑 규칙 위반을 구성하는 상황과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도핑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러한 특정 규칙 중 하나 이상이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는 도핑 규칙 위반을 구성하는 사항과 금지 목록에 포함된 물질 및 방법을 알고 있을 책임이 있다.

다음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한다:

### 2.1 선수 샘플에서 금지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표지물질 검출

2.1.1 금지물질이 자신의 신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수의 개인적 의무이다. 선수는 자신의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표지물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2.1조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선수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고의적 사용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sup>2</sup>

2.1.2 제2.1조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선수 A 시료에서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물 또는 표지자가 검출된 경우, 선수가 B 시료 분석을 포기하고 B 시료가 분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수 B 시료가 분석되어 선수 A 시료에서 검출된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물 또는 표지자의 존재가 선수 B 시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경우; 선수 A 샘플 또는 B 샘플을 두 부분으로 분할한 경우, 분할 샘플의 확인 부분 분석 결과 분할 샘플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된 금지 물질

---

<sup>2</sup> 본 조항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은 선수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된다. 이 규정은 다양한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판결에서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으로 언급되어 왔다. 선수의 과실은 제10조에 따른 본 반도핑 규정 위반의 결과 결정 시 고려된다. 이 원칙은 CAS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는 그 대사산물 또는 표지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선수가 분할 샘플의 확인 부분 분석을 포기한 경우.<sup>3</sup>

2.1.3 금지 목록 또는 기술 문서에 결정 한계가 명시된 물질을 제외하고, 선수 샘플에서 보고된 양의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 또는 표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이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2.1.4 제2.1조의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지 목록, 국제 기준 또는 기술 문서는 특정 금지 물질의 보고 또는 평가에 대한 특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2 선수의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사용 또는 사용 시도<sup>4</sup>

2.2.1 금지 물질이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금지 방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선수 측의 의도, 과실, 태만 또는 고의적 사용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2.2.2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된 사실만으로도 반도핑 규정 위반이 성립된다.<sup>5</sup>

---

<sup>3</sup> 결과 관리 책임을 가진 반도핑 기구는 선수의 B 시료 분석 요청이 없더라도 재량에 따라 B 시료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sup>4</sup>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해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2.1조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달리, 사용 또는 사용 시도는 선수의 자백, 증인 진술, 문서 증거,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수집 데이터를 포함한 종단적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또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지 물질의 “존재” 입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기타 분석 정보 등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샘플 분석 결과(B 샘플 분석 확인 없이) 또는 B 샘플 단독 분석 결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이 입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도핑 기구는 다른 샘플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sup>5</sup>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시도”를 입증하려면 선수 측의 의도 증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정 반도핑 규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사용과 관련하여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에 대해 확립된 엄격한 책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선수에 의한 금지 물질의 사용은 해당 물질이 경기 외 시간에 금지되지 않았고 선수의 사용이 경기 외 시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도핑 규정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경기 중 채취된 검체에서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물·표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물질이 언제 투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제2.1조 위반으로 간주된다.)

2.3 선수의 시료 채취 회피, 거부 또는 불이행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 채취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행위.<sup>6</sup>

2.4 선수의 소재 정보 미제출

등록된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선수가 12개월 기간 내에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정의된 대로 3회의 검사 불참 및/또는 정보 미제출을 조합하여 위반하는 경우.

2.5 선수 또는 기타 인원에 의한 도핑 관리의 어느 부분에 대한 조작 또는 조작 시도

2.6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인원에 의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보유

2.6.1 경기 중 선수의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소지, 또는 경기 외 선수의 경기 외 금지 물질 또는 경기 외 금지 방법 소지(단, 선수가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여된 치료용 면제("TUE") 또는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 사유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2.6.2 경기 중 선수 지원 인원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소지하거나, 경기 외 선수 지원 인원이 경기, 훈련과 관련하여 경기 외 금지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소지하는 행위. 단, 선수 지원 인원이 해당 소지가 제4조 4항에 따라 선수에게 부여된 치료용 면제(TUE) 또는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 사유와 일치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sup>7</sup>

2.7 선수 또는 기타 인원에 의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유통 또는 유통 시도

2.8 경기 중 선수에게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경기 외 선수에게 경기 외 금지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

<sup>6</sup> 예를 들어, 선수가 통지 또는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핑 관리 담당자를 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는 "검체 채취 회피"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이 된다. "검체 채취 불응" 위반은 선수의 고의적 또는 과실적 행위에 근거할 수 있는 반면, '회피' 또는 "거부"는 선수의 고의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sup>7</sup>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는 자녀를 위한 인슐린 구입과 같이 의사의 처방이 있는 의학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친구나 친척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지 물질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예를 들어 (a) 선수 또는 팀 의사가 급성 및 응급 상황(예: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휴대하는 경우, 또는 (b) 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소지한 후 곧바로 치료용 예외(TUE)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행위

2.9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도움, 권유, 조력, 방조, 공모, 은폐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고의적 공모 또는 다른 사람의 반도핑 규칙 위반, 반도핑 규칙 위반 시도 또는 제10.14.1조 위반에 대한 공모 시도<sup>8</sup>

2.10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의 금지된 관계

2.10.1 도핑 방지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자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 지원 인력과 관계를 맺는 행위:

2.10.1.1 도핑 방지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을 이행 중인 자 또는

2.10.1.2 반도핑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규정(Code)에 따른 결과 관리 절차에서 자격 정지가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에게 규정 준수 규칙이 적용되었다면 반도핑 규칙 위반을 구성했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형사, 징계 또는 전문적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인정된 경우. 해당 인물의 실격 상태는 형사, 전문직 또는 징계 결정일로부터 6년 또는 부과된 형사, 징계 또는 전문직 제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하다 또는

2.10.1.3 제2.10.1.1조 또는 제2.10.1.2조에 명시된 개인을 위한 대리인 또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 중인 경우.

2.10.2 제 2.10 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반도핑 기구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선수 지원 인력의 자격 정지 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2.10.1.1조 또는 제2.10.1.2조에 명시된 선수 지원 인력과 관계가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성격이 아니며, 그리고/또는 그러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선수 또는 기타 인물에게 있다.

제2.10.1.1조, 제2.10.1.2조 또는 제2.10.1.3조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 지원 인력을 인지한 반도핑 기구는 해당 정보를 WADA에 제출해야 한다.<sup>9</sup>

---

<sup>8</sup> 공모 또는 공모 시도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sup>9</sup> 선수 및 기타 인원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코치, 트레이너, 의사 또는 기타 선수 지원 인원, 또는 도핑 관련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전문적 징계를 받은 자와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한

2.11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당국에 대한 신고를 방해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해당 행위가 제2.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11.1 WADA, 반도핑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전문직 징계 기관, 청문 기관 또는 WADA 또는 반도핑 기관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주장된 반도핑 규정 위반 또는 주장된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선의로 신고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다른 개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행위.

2.11.2 선의로 WADA, 반도핑 기구,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전문직 징계 기관, 청문 기관 또는 WADA 또는 반도핑 기구를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도핑 방지 규정 위반 또는 규정 미준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

제2.11조의 목적상, 보복, 위협 및 협박에는 해당 행위가 선의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균형적인 대응인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해 취해진 행위가 포함된다.<sup>10</sup>

### 제 3 조      도핑 입증

#### 3.1 입증 책임 및 기준

FIAS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입증 기준은 제기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FIAS가 청문 패널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입증했는지 여부이다. 이 증명 기준은 모든 경우에 단순한 우세성보다 높으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보다는 낮다. 본 반도핑 규칙이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여 추정 사실을 반박하거나 특정 사실 또는 상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제3.2.2조 및

---

자격정지 기간 중 코치 또는 선수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는 다른 선수와의 관계도 금지한다. 금지되는 관계 유형의 예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훈련, 전략, 기술, 영양 또는 의학적 조언을 받는 행위; 치료, 처방 또는 처방을 받는 행위; 분석을 위한 신체 제품 제공 행위; 또는 선수 지원 인력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금지된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수반할 필요가 없다.

제2.10조는 반도핑 기구가 선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수 지원 인원의 자격 박탈 상태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통지가 제공된 경우 선수 또는 다른 사람이 선수 지원 인원의 자격 박탈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sup>10</sup> 본 조항은 선의로 신고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개인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제3.2.3조에 규정된 경우 제외), 증명 기준은 우세성으로 한다.<sup>11</sup>

## 3.2 사실 및 추정의 입증 방법

도핑규칙 위반과 관련된 사실은 자백을 포함한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sup>12</sup> 도핑 사건에는 다음의 증명 규칙이 적용된다:

3.2.1 관련 과학계 내 협의 후 WADA가 승인하거나 동료 검토를 거친 분석 방법 또는 판정 기준은 과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추정 조건 충족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추정을 반박하려는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은 그러한 이의 제기의 선행 조건으로 먼저 WADA에 이의 제기 내용 및 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초기 심판 기관, 항소 기관 또는 CAS는 자체 판단에 따라 그러한 이의 제기를 WADA에 통보할 수도 있다. WADA가 해당 통지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건 파일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WADA는 당사자로서 개입하거나, 법정 친구(amicus curiae)로 출석하거나, 해당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CAS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WADA의 요청에 따라 CAS 패널은 이의제기 평가를 지원할 적절한 과학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sup>13</sup>

3.2.2 WADA 인증 실험실 및 WADA가 승인한 기타 실험실은 국제 실험실 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및 보관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는 국제 실험실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이 발생하여 부정적 분석 결과를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국제 실험실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이 발생하여

---

<sup>11</sup> FIAS가 충족해야 하는 이 증명 기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직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하다.

<sup>12</sup> 예를 들어, FIAS는 선수의 자백, 제3자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증거, 제2.2조 주석에 명시된 A 또는 B 샘플의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 또는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데이터와 같은 선수의 일련의 혈액 또는 소변 샘플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결론을 근거로 제2.2조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

<sup>13</sup> 특정 금지 물질의 경우, WADA는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물·표지물질의 추정 농도가 최소 보고 수준 미만일 때 WADA 인증 실험실에 불리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최소 보고 수준을 결정하거나 최소 보고 수준 적용 대상 금지 약물을 결정하는 WADA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실험실에서 샘플 내 해당 금지 약물의 추정 농도는 단순 추정값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 내 금지 물질의 정확한 농도가 최소 보고 수준 미만일 가능성은 해당 금지 물질의 존재에 근거한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

부정적 분석 결과를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전술한 추정치를 반박하는 경우, FIAS는 그러한 편차가 부정적 분석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sup>14</sup>

3.2.3 본 규정 또는 본 반도핑 규칙에 명시된 기타 국제 기준, 반도핑 규칙 또는 정책의 위반은 분석 결과나 반도핑 규칙 위반의 기타 증거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반도핑 규칙 위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되지 않는다.<sup>15</sup> 단,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아래 열거된 특정 국제 기준 조항 중 하나를 이탈한 것이 부정적 분석 결과 또는 소재지 미이행에 근거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FIAS는 그러한 이탈이 부정적 분석 결과 또는 소재지 미이행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i) 시료 채취 또는 시료 취급과 관련된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의 이탈로 인해 부정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반도핑 규정 위반이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경우 FIAS는 해당 이탈이 부정적 분석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ii)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와 관련된 국제 결과 관리 기준 또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의 이탈로 인해 합리적으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경우 FIAS는 해당 이탈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iii) B 샘플 개봉 통보 의무와 관련된 결과 관리 국제 기준 위반으로 인해 부정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

<sup>14</sup>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는 국제 실험실 기준(ISL)에서 벗어난 사항이 불리한 분석 결과를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었음을 우세성(balance of probability) 기준에 따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우세성 기준에 따라 해당 이탈 사항을 입증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다소 낮은 증명 기준인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었음”으로 완화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이탈이 부정적 분석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청문 패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할 책임은 FIAS로 이전된다.

<sup>15</sup> 시료 채취 또는 취급과 무관한 국제 기준 또는 기타 규칙의 이탈,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 또는 소재지 미신고 또는 B 샘플 개봉과 관련된 선수 통지와 무관한 경우 - 예: 교육에 관한 국제 기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 또는 치료용 면제에 관한 국제 기준 - 는 WADA의 준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도핑 규정 위반 절차에서 방어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수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과 관련이 없다. 마찬가지로, FIAS가 규정 제20.7.7조에 언급된 문서를 위반한 사실은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있었던 경우, 이 경우 FIAS는 해당 위반이 부정적 분석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sup>16</sup>

(iv) 선수 통보와 관련된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로, 소재지 미이행에 근거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경우 FIAS는 해당 위반이 소재지 미이행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2.4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전문 징계 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은, 해당 결정이 자연정의 원칙을 위반했음을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의 대상이 된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에 대해 그 사실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로 간주된다.

3.2.5 도핑규칙 위반에 관한 심의에서 심의위원회는 도핑규칙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심의 전에 합리적인 시기에 요청된 출석 요청을 거부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요청한 후에도 심의에 출석(심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전화로)하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FIAS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 근거하여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 제 4 조      금지목록

### 4.1 금지목록의 편입

본 반도핑 규칙은 코드 제4.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WADA가 발간 및 개정하는 금지목록을 포함한다.

금지목록 또는 개정안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금지목록 및 개정안은 WADA 발간 후 3개월이 경과하면 FIAS 또는 그 국가 연맹의 추가 조치 없이 본 반도핑 규칙 하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선수 및 기타 관련자는 금지목록 및 그 개정안이 발효되는 날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선수 및 기타 관련자는 최신 버전의 금지목록 및 그 개정안을 숙지할 책임이 있다.

FIAS는 자국 연맹에 금지목록의 최신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각 자국 연맹은

---

<sup>16</sup> FIAS는 예를 들어 B 샘플 개봉 및 분석 과정이 독립적인 증인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어떠한 부정확성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편차가 부정적 분석 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차례로 자국 회원 및 회원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금지목록의 최신 버전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sup>17</sup>

## 4.2 금지목록에 명시된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

### 4.2.1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

금지 목록은 향후 경기에서의 경기력 향상 가능성 또는 은폐 가능성으로 인해 경기 중 및 경기 외 모든 시기에 도핑으로 금지되는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과, 경기 중에만 금지되는 물질 및 방법을 명시한다. 금지 목록은 특정 종목을 위해 WADA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은 일반 범주(예: 단백동화제)로 또는 특정 물질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금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sup>18</sup>

### 4.2.2 지정 물질 또는 지정 방법

제10조 적용 목적상, 금지 목록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금지 물질은 지정 물질로 간주된다. 금지된 방법이 금지 목록에 명시적으로 특정 방법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금지된 방법도 특정 방법이 될 수 없다.<sup>19</sup>

### 4.2.3 남용 물질

제10조 적용을 위해, 남용 물질에는 스포츠 외 사회에서 빈번히 남용되는 이유로 금지 목록에 명시적으로 남용 물질로 지정된 금지 물질이 포함된다.

## 4.3 WADA의 금지 목록 결정

WADA가 금지 목록에 포함될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의 결정, 금지 목록 내 물질의 범주 분류, 물질의 '항상 금지' 또는 '경기 중 금지' 분류, 물질 또는 방법의 '지정 물질' 분류는 최종적이며, 선수 또는 기타 개인(해당 물질이나 방법이 가림제(masking agent)가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로 한 이의를 포함하되

---

<sup>17</sup> 현행 금지목록은 WADA 웹사이트(<https://www.wada-a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지목록은 필요 시 신속히 개정 및 공표될 것이다. 다만 예측 가능성을 위해,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새로운 금지목록이 공표될 것이다.

<sup>18</sup> 경기 중 금지된 물질의 경기 외 사용은 해당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표지물질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가 경기 중 채취된 검체에서 보고되지 않는 한 도핑규칙 위반이 아니다.

<sup>19</sup> 제4.2.2조에서 규정한 특정 물질 및 방법은 다른 도핑 물질이나 방법보다 중요도가 낮거나 위험성이 적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은 단순히 운동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선수가 섭취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물질 및 방법일 뿐이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 방법 또는 남용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최종적이며,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해당 물질이나 방법이 가리개 물질이 아니거나 성능 향상 가능성, 건강 위험 또는 스포츠 정신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포함한(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 4.4 치료용 면제("TUEs")

4.4.1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표지물질의 존재,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사용 시도·소지·투여 또는 투여 시도는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에 따라 부여된 TUE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4.4.2 TUE 신청

4.4.2.1 국제 수준 선수가 아닌 선수는 자국 국가 도핑 방지 기구(NADO)에 TUE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 도핑 방지 기구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제13.2.2조에 명시된 국가 수준 항소 기구에 독점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4.4.2.2 국제급 선수는 FIAS에 신청해야 한다.

##### 4.4.3 TUE 인정<sup>20</sup>

4.4.3.1 해당 선수가 이미 해당 물질 또는 방법에 대해 규정 제4.4조에 따라 국가 반도핑 기구로부터 TUE를 부여받은 경우, 그리고 그러한 TUE 결정이 치료용 면제 국제 기준 제5.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 FIAS는 관련 임상 정보를 검토할 필요 없이 국제 대회 목적상 이를 자동으로 인정한다.

4.4.3.2 FIAS가 국제 수준 선수가 아닌 선수를 검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선수가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 제5.8조 및 제7.0조에 따라 TUE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FIAS는 해당 선수가 소속 국가

---

<sup>20</sup> 국제 스포츠 연맹(FIAS)이 국가 도핑 방지 기구(NADO)가 부여한 치료용 면제(TUE)를 단순히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ISTUE)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의료 기록이나 기타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세계 도핑 방지 기구(WADA)에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FIAS에 재제출해야 한다.

FIAS는 국가 도핑 방지 기구와 협의하여 해당 기구가 FIAS를 대신하여 TUE 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반도핑 기구로부터 부여받은 TUE를 인정해야 한다.

#### 4.4.4 TUE 신청 절차<sup>21</sup>

4.4.4.1 해당 물질 또는 방법에 대해 국가 반도핑 기구로부터 TUE를 아직 부여받지 않은 선수는 FIAS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4.4.4.2 FIAS에 대한 TUE 부여 또는 인정 신청은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 제4.1조 또는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은 FIAS 웹사이트에 게시된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 제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4.4.3 FIAS는 아래 4.4.4.3(a)-(d)항에 따라 치료용 면제(TUE) 부여 또는 인정에 관한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치료용 면제 위원회("TUEC")를 구성하거나, 사례별로 위임된 제3자에게 이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a) TUEC는 선수의 치료 및 관리 경험과 임상, 스포츠 및 운동 의학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갖춘 최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임명된 각 위원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최대 3회까지 재임할 수 있으며, 재임 기간은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일 수 있다.

(b) TUEC 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각 위원은 이해 상충 및 기밀 유지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임명된 위원들은 FIAS의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c) FIAS에 TUE 부여 또는 인정을 위한 신청이 접수될 경우, TUEC 위원장 또는 FIAS는 해당 신청을 심사할 위원 3명(위원장 포함 가능)을 임명한다.

(d) TUE 신청을 심사하기 전에, 각 위원은 신청을 한 선수에 대한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중 선수가 제출한 TUE 신청을 평가하기를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 또는 FIAS는 상기 (a)항에 따라

---

<sup>21</sup> 제4.4.6조 해설: TUEC 또는 FIAS에 위조 문서를 제출하거나, 특정 행위의 수행 또는 불이행을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수수하거나, 증인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유도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 또는 TUE 절차의 어느 측면에 대한 유사한 고의적 간섭 또는 간섭 시도를 행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조작 또는 조작 시도로 기소된다.

선수들은 TUE 부여 또는 인정(또는 TUE 갱신) 신청이 반드시 승인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 소지 또는 투여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선수 자신의 책임이다.

임명된 위원 풀에서 대체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장은 TUE 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TUE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4.4.4.4 TUEC는 치료용 면제 국제 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청을 신속히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완전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대회 전에 합리적인 시기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TUEC는 대회 시작 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4.4.5 TUEC 결정은 FIAS의 최종 결정이며, 제4.4.7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FIAS TUEC 결정은 선수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에 따라 WADA 및 기타 반도핑 기구에도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즉시 ADAMS에 보고되어야 한다.

4.4.4.6 FIAS(또는 FIAS를 대신하여 신청을 심사하기로 합의한 국가 도핑 방지 기관)가 선수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선수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FIAS가 선수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선수뿐만 아니라 해당 선수의 국가 도핑 방지 기관에도 통지해야 한다. 국가 도핑 방지 기관이 FIAS가 승인한 TUE가 치료용 면제 국제 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4.4.7조에 따라 WADA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 반도핑 기구가 WADA에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WADA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FIAS가 부여한 TUE는 국제 대회 및 경기 외 검사(그러나 국가 대회에는 유효하지 않음)에 대해 유효성을 유지한다. 국가 반도핑 기구가 WADA에 심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FIAS가 부여한 TUE는 21일 심사 기한이 만료되면 국내 대회에서도 유효해진다.

#### 4.4.5 소급적 TUE 신청

FIAS가 국제급 선수 또는 국내급 선수가 아닌 선수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FIAS는 해당 선수가 소급적 TUE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4.4.6 TUE의 만료, 철회 또는 취소

4.4.6.1 본 반도핑 규정에 따라 부여된 TUE는: (a) 부여된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통지나 기타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만료된다; (b) 선수권 부여 시 TUEC가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선수가 즉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철회된다; (c) TUE 부여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음이 사후 확인될 경우 TUEC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또는 (d) WADA의 재검토 또는 항소 절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4.4.6.2 이러한 경우, 선수는 TUE의 유효기간 만료, 취소 또는 반복이 발효되기 전까지 TUE에 따라 해당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소지 또는 투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TUE 만료, 취소 또는 취소 직후 보고된 부정적 분석 결과에 대한 국제 결과 관리 기준 제5.1.1.1조에 따른 검토에는 해당 결과가 해당 날짜 이전의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사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 도핑 규칙 위반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 4.4.7 TUE 결정에 대한 검토 및 항소

4.4.7.1 WADA는 선수 또는 선수의 국가 도핑 방지 기구(NADO)가 WADA에 회부한, 국가 도핑 방지 기구(NADO)가 부여한 TUE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FIAS의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WADA는 선수의 국가 도핑 방지 기구(NADO)가 WADA에 회부한 TUE 부여에 관한 FIAS의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WADA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언제든지 다른 TUE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검토 대상 TUE 결정이 치료용 면제 국제 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WADA는 이를 간섭하지 않는다. TUE 결정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WADA는 이를 반복한다.<sup>22</sup>

4.4.7.2 WADA의 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WADA의 검토를 받았으나 검토 결과 반복되지 않은 FIAS(또는 FIAS를 대신하여 신청을 심사하기로 합의한 국가 반도핑 기구)의 TUE 결정은 선수 및/또는 선수의 국가 반도핑

---

<sup>22</sup> WADA는 다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a) 제4.4.7조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재검토, (b) 재검토 대상 결정이 반복된 경우 WADA가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재검토.

기구가 CAS에 독점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sup>23</sup>

4.4.7.3 WADA의 TUE 결정 반복 결정은 선수, 국가 반도핑 기구 및/또는 FIAS가 CAS에 독점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4.4.7.4 적절히 제출된 TUE 부여/인정 신청 또는 TUE 결정 재검토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이는 신청 거절로 간주되어 해당 재검토/항소 권리가 발생한다.

## 제 5 조      검사 및 조사

### 5.1    검사 및 조사의 목적<sup>24</sup>

5.1.1 검사 및 조사는 모든 반도핑 목적을 위해 수행될 수 있다. 이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1.2 검사는 선수가 제2조 제1항(선수 검체 내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물·표지물질 존재) 또는 제2조 제2항(선수에 의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 5.2    검사 권한

5.2.1 제5.3조에 명시된 대회 검사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FIAS는 본 반도핑 규정 서론(“본 반도핑 규정의 적용 범위” 항목)에 명시된 모든 선수에 대해 경기 중 및 경기 외 검사 권한을 가진다.

5.2.2 FIAS는 검사 권한이 있는 모든 선수(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 포함)에게 언제 어디서든 검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sup>25</sup>

---

<sup>23</sup> 이러한 경우 항소 대상 결정은 WADA의 TUE 결정 검토 거부 결정 또는 (검토 후) TUE 결정 반복 거부 결정이 아닌 FIAS의 TUE 결정이다. 그러나 TUE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간은 WADA가 해당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시작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WADA가 결정을 재검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WADA는 항소 통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sup>24</sup> 반도핑 목적으로 실시된 검사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데이터는 해당 반도핑 기구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정당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정 제23.2.2조 해설 참조.

<sup>25</sup> FIAS는 다른 서명 기관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할 추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선수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60분간의 검사 가능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해당 시간대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FIAS는 선수가 도핑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의심이 없는 한, 해당 시간대에 선수를 검사하지 않는다. 이 시간대에 검사를 위한 충분한 의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검사 또는 검사 시도에 근거한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

5.2.3 WADA는 규정 제20.7.10조에 명시된 대로 경기 중 및 경기 외 검사 권한을 가진다.

5.2.4 FIAS가 국가 도핑 방지 기구(NADO)에 직접 또는 국가 연맹을 통해 검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계약하는 경우, 해당 NADO는 추가 시료를 채취하거나 실험실에 추가 분석 유형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NADO가 부담한다. 추가 시료 채취 또는 추가 분석 유형 수행 시 FIAS에 통보해야 한다.

### 5.3 대회 기간 중 검사

5.3.1 아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 기간 중 대회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할 권한은 단일 기관에만 부여된다. 국제 대회에서는 FIAS(또는 해당 대회의 주관 기관인 기타 국제 기구)가 검사 수행 권한을 가진다. 국가 대회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가 반도핑 기구가 검사 권한을 가진다. FIAS(또는 해당 대회의 주관 국제 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사는 FIAS(또는 해당 대회의 관련 주관 기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5.3.2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서 선수 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반도핑 기구(원칙적으로 검사 권한이 있으나 해당 대회에서 검사 개시 및 지휘 책임이 없는 경우)는 먼저 FIAS(또는 해당 대회의 주관 기관인 기타 국제 기구)와 협의하여 해당 검사 수행 및 조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반도핑 기구가 FIAS(또는 해당 대회의 주관 기관인 기타 국제 기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반도핑 기구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WADA에 검사 수행 허가를 요청하고 해당 검사의 조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WADA는 FIAS(또는 해당 경기의 주관 기관인 기타 국제 기구)와 협의하고 통보하기 전에는 그러한 검사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WADA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사 수행 허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검사는 경기 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로 간주된다.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 관리는 경기 주관 기관의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검사를 시작한 반도핑 기구의 책임이다.<sup>26</sup>

---

<sup>26</sup> 국제대회에서 국가 반도핑 기구가 검사를 개시 및 수행하도록 승인하기 전에, WADA는 해당 대회의 주관 국제 기구와 협의해야 한다. 국가대회에서 국제 연맹이 검사를 개시 및 수행하도록 승인하기 전에,

## 5.4 검사 요건

5.4.1 FIAS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검사 분배 계획 수립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5.4.2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통합 검사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 ADAMS를 통해 검사를 조정해야 한다.

## 5.5 선수 소재 정보

5.5.1 FIAS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명시된 방식으로 소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10.3.2조에 규정된 제2.4조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선수들로 구성된 등록 검사 풀을 설정할 수 있다. FIAS는 국가 반도핑 기구와 협력하여 해당 선수들을 식별하고 소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5.5.2 FIAS는 ADAMS를 통해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의 이름을 명시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FIAS는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선수를 포함시키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해야 하며,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선수 목록을 주기적으로(최소 분기별) 검토하여 명단에 포함된 각 선수가 관련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수는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 전과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때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에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5.5.3 선수가 FIAS의 국제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과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의 국가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동시에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와 FIAS는 상호 협의하여 어느 기관이 해당 선수의 소재 정보 제출을 접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는 두 기관 이상에 소재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5.5.4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각 선수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분기별로 FIAS에 자신의 소재지를 통보하고, (b) 해당 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 시 업데이트하며, (c)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5.5 제2.4조의 목적상, 선수가 국제검증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WADA는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국가 반도핑 기체와 협의해야 한다. “검사를 개시하고 지시하는” 반도핑 기체는 선택에 따라, 시료 채취 또는 도핑 통제 과정의 다른 측면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는 위임된 제3자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부속서 B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될 때 국제결과관리기준 부속서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고 불이행 또는 검사 불참으로 간주된다.

5.5.6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선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명시된 소재지 보고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a) 선수가 FIAS에 은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또는 (b) FIAS가 해당 선수가 더 이상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

5.5.7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선수의 소재 정보는 ADAMS를 통해 WADA 및 제5.2조에 따라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기타 반도핑 기구가 접근할 수 있다. 소재 정보는 항상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도핑 통제 계획 수립, 조정 또는 수행,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또는 기타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보 제공,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조사 지원, 또는 반도핑 규정 위반 주장 절차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과 더 이상 관련이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5.5.8 FIAS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로부터 소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가 FIAS가 요구한 기한까지 요청된 소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확한 소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FIAS는 해당 선수를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설정된 경우)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5.5.9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FIAS는 FIAS의 등록 검사 풀에 포함된 선수들보다 덜 엄격한 소재지 요건이 적용되는 선수들을 포함하는 검사 풀을 설정할 수 있다.

5.5.10 FIAS는 선수를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기 전 및 명단에서 제외할 때 해당 선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는 제5.5.11조 및 제5.5.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재지 보고 요건 및 미준수 시 적용되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5.5.11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선수는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의 소재 정보를 FIAS에 제공해야 한다:

(a) 숙박 주소

(b) 경기/행사 일정

(c) 정기 훈련 활동

이러한 소재 정보는 다른 반도핑 기구와의 검사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ADAMS에 등록되어야 한다.

5.5.12 선수가 FIAS가 요구한 기한까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확한 소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FIAS는 해당 선수를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설정된 경우)으로 상향 조정하고, 코드 제2.4조 외에 추가적이며 적절하고 비례적인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5.6 현역 복귀를 원하는 은퇴 선수

5.6.1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국제급 선수 또는 국가급 선수가 은퇴 후 현역으로 복귀를 원할 경우, 해당 선수는 FIAS 및 소속 국가 반도핑 기구에 6개월 전 서면 통지를 통해 검사 가능 상태를 알리기 전까지 국제 대회 또는 국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WADA는 FIAS 및 해당 선수의 국가 반도핑 기구와 협의하여, 해당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선수에게 불공정할 경우 6개월 사전 서면 통보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제13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sup>27</sup>

본 제5.6.1조를 위반하여 획득한 모든 경기 결과는 해당 선수가 해당 대회가 국제 대회 또는 국가 대회임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격 처리된다.

5.6.2 자격정지 기간 중 스포츠에서 은퇴하는 선수는 자격정지를 부과한 반도핑 기관에 서면으로 은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선수가 스포츠 현역 복귀를 원할 경우, FIAS 및 소속 국가 도핑 방지 기구에 6개월 전 서면 통지(또는 선수 은퇴 시점 기준 잔여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통지)를 통해 검사 대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국제 대회 또는 국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5.7 독립 관찰자 프로그램

FIAS 및 FIAS 대회의 조직 위원회, 국가 연맹 및 국가 대회의 조직 위원회는 해당 대회에서 독립 관찰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촉진해야 한다.

---

<sup>27</sup> WADA는 선수들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절차 및 면제 신청서 양식과 국제연맹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결정 서식 양식을 마련하였다. 두 문서 모두 WADA 웹사이트(<https://www.wada-a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 6 조 시료 분석

시료는 다음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 6.1 공인·승인 실험실 및 기타 실험실의 사용

6.1.1 제2.1조에 따른 부정적 분석 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를 직접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시료는 WADA 공인 실험실 또는 WADA가 별도로 승인한 실험실에서만 분석되어야 한다. 시료 분석에 사용되는 WADA 인증 또는 WADA 승인 실험실의 선택은 전적으로 FIAS가 결정한다.<sup>28</sup>

6.1.2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실은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WADA 인증 또는 승인 실험실 외부에서 수행된 신뢰할 수 있는 실험실 또는 기타 법의학적 검사가 포함될 수 있다.

### 6.2 샘플 및 데이터 분석 목적

샘플 및 관련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 통제 정보는 금지 목록에 명시된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 또는 코드 제4.5조에 명시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WADA가 지시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검출하거나, FIAS가 선수의 소변, 혈액 또는 기타 매트릭스(DNA 또는 게놈 프로파일링 포함)의 관련 매개변수 프로파일링을 지원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반도핑 목적을 위해 수행된다.<sup>29</sup>

### 6.3 샘플 및 데이터 연구

샘플, 관련 분석 데이터 및 도핑 통제 정보는 반도핑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선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샘플도 연구에 사용될 수 없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료 및 관련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 통제 정보는 먼저 특정 선수에게 추적될 수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시료 및 관련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 통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연구는 규약 제19조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sup>30</sup>

---

<sup>28</sup> 제2조 제1항 위반은 WADA 인증 실험실 또는 WADA가 승인한 다른 실험실에서 수행한 샘플 분석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다른 조항 위반은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다른 실험실의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입증될 수 있다.

<sup>29</sup> 예를 들어, 관련 도핑 통제 정보는 표적 검사 지시나 제2.2조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 절차 지원, 또는 양쪽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

<sup>30</sup> 대부분의 의료·과학적 맥락과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개선, 방법 개선 및 개발 또는 기준 집단 설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허용된 비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료 및

#### 6.4 시료 분석 및 보고 기준

규정 제6.4조에 따라, FIAS는 실험실에 국제 실험실 기준 및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 제4.7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분석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실험실은 자체 판단과 비용으로 표준 시료 분석 메뉴에 포함되지 않은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에 대한 시료 분석을 수행하거나 FIAS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FIAS에 보고되어야 하며, 다른 분석 결과와 동일한 유효성과 결과를 가져야 한다.<sup>31</sup>

#### 6.5 결과 관리 전 또는 중 시료의 추가 분석

FIAS가 선수에게 해당 시료가 제2조 제1항 도핑규칙 위반 혐의의 근거가 된다고 통보하기 전까지, 실험실이 시료에 대해 반복 또는 추가 분석을 수행할 권한에는 제한이 없다. 해당 통보 이후 FIAS가 해당 시료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선수의 동의 또는 심판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 6.6 음성으로 보고되거나 기타 사유로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지 않은 시료의 추가 분석

실험실에서 샘플을 음성으로 보고한 후, 또는 샘플이 그 밖의 방법으로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샘플 수집을 시작하고 지시한 반도핑 기관 또는 WADA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제6.2조를 목적으로 샘플을 보관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보관된 검체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다른 반도핑 기구는 검체 채취를 시작하고 지시한 반도핑 기구 또는 WADA의 허가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후속 결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WADA 또는 다른 반도핑 기구가 시작한 시료 보관 또는 추가 분석은 WADA 또는 해당 기구의 비용으로 진행된다. 시료의 추가 분석은 국제 실험실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Laboratories)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관련 정보는 또한 코드 제19조에 명시된 원칙과 국제실험실기준 및 개인정보보호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특정 선수에게 역추적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sup>31</sup> 본 조항의 목적은 도핑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지능적 검사” 원칙을 검체 분석 메뉴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핑 퇴치를 위한 가용 자원이 제한적이며, 일부 종목 및 국가에서는 검체 분석 메뉴를 확대할 경우 분석 가능한 검체 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6.7 A 또는 B 시료 분할

WADA,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반도핑 기구 및/또는 WADA 인증 실험실(WADA 또는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반도핑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 분할된 샘플의 첫 번째 부분을 A 샘플 분석에 사용하고 두 번째 부분을 확인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A 샘플 또는 B 샘플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 실험실 표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6.8 WADA의 시료 및 데이터 점유권

WADA는 사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실험실 또는 반도핑 기구가 보유한 모든 시료 및 관련 분석 데이터 또는 정보를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WADA의 요청 시, 샘플 또는 데이터를 보유한 실험실 또는 반도핑 기구는 즉시 접근을 허용하고 WADA가 샘플 또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ADA가 샘플 또는 데이터 점유 전에 실험실 또는 반도핑 기구에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점유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WADA가 점유한 샘플 또는 데이터의 소유 실험실 및 각 반도핑 기구에 해당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압수된 샘플 또는 데이터의 분석 및 조사 후,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이 발견된 경우 WADA는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다른 반도핑 기구에게 해당 샘플 또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 관리 책임을 맡도록 지시할 수 있다.<sup>32</sup>

## 제 7 조 결과 관리: 책임, 초기 검토, 통지 및 잠정적 자격 정지

본 반도핑 규칙에 따른 결과 관리는 반도핑 규칙 위반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다.

### 7.1 결과 관리 수행 책임

7.1.1 제6조 제6항, 제6조 제8항 및 코드 제7조 제1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

<sup>32</sup> WADA가 시료 또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서명국 규정 준수 국제 기준에 규정된 조작, 공모 또는 불이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험실 국제 기준 위반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실험실 및/또는 반도핑 기구는 압수된 샘플 또는 데이터가 해당 국가를 지체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WADA를 지원해야 한다.

WADA는 물론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서명국의 규정 미준수 또는 다른 개인의 도핑 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샘플 또는 분석 데이터를 압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WADA의 재량에 따르며 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타당한 사유 유무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

제외하고, 결과 관리는 시료 채취를 개시하고 지시한 반도핑 기관(또는 시료 채취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게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가능성을 최초로 통지하고 그 후 해당 반도핑 규정 위반을 성실히 추적하는 반도핑 기관)의 절차 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7.1.2 국가 도핑 방지 기구의 규칙이 해당 국가의 국민, 거주자,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스포츠 기구 회원이 아닌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 도핑 방지 기구가 그러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연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제3자 또는 해당 국제연맹이 지정한 기관이 결과 관리를 수행한다.

7.1.3 주요 대회 조직이 자체 주관 대회 중 채취된 검체 또는 해당 대회 중 발생한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제한된 결과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 주요 대회 조직은 해당 사례를 결과 관리 완료를 위해 해당 국제 연맹에 이관하여야 한다.

7.1.4 잠재적 소재 정보 미제출(소재 정보 미제출 또는 검사 불참)과 관련된 결과 관리는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선수가 소재 정보를 제출한 FIAS 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가 관리한다. FIAS가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정보를 ADAMS를 통해 WADA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다른 관련 반도핑 기관에도 제공된다.

7.1.5 FIAS가 관할권 하의 선수 및 기타 인원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결과 관리 수행 책임을 지는 기타 상황은 코드 제7조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7.1.6 WADA는 특정 상황에서 FIAS에 결과 관리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FIAS가 WADA가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결과 관리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는 규정 미준수 행위로 간주되며, WADA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 다른 반도핑 기구 중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기구에게 FIAS를 대신하여 결과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FIAS는 WADA가 지정한 다른 반도핑 기구에 결과 관리 수행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행위로 간주된다.

## 7.2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에 관한 검토 및 통지

FIAS는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따라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에 관한 검토 및 통지를 수행해야 한다.

## 7.3 이전 반도핑 규정 위반 사항 확인

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통지를 하기 전에, FIAS는 ADAMS를 참조하고 WADA 및 기타 관련 반도핑 기구와 연락하여 이전 반도핑 규정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7.4 잠정적 자격 정지<sup>33</sup>

### 7.4.1 부정적 분석 결과 또는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 발생 후 의무적 잠정적 자격 정지

FIAS가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지정 물질 또는 지정 방법이 아닌 경우)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 또는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부정적 패스포트 결과 검토 절차 완료 시)를 수신한 경우, 제7.2조에 따른 검토 및 통지 후 즉시 해당 선수에게 잠정적 자격 정지를 부과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무적 잠정적 자격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i) 선수가 FIAS 청문 패널에 위반이 오염된 제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ii) 위반이 남용 물질과 관련되었고 선수가 제10.2.4.1조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 감축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오염된 제품에 관한 선수의 주장으로 인해 의무적 잠정적 자격 정지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FIAS 청문 패널의 결정은 항소할 수 없다.

### 7.4.2 특정 물질, 특정 방법, 오염된 제품 또는 기타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선택적 잠정적 자격 정지

FIAS는 제7.4.1조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선수의 B 샘플 분석 또는 제8조에 명시된 최종 청문회 전에 잠정적 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적 잠정적 자격 정지는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IAS 청문 패널의 제8조에 따른 결정 이전에 FIAS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 7.4.3 청문회 또는 항소 기회

---

<sup>33</sup> FIAS가 단독으로 잠정적 자격 정지를 부과하기 전에, 본 반도핑 규정 및 국제 성적 관리 기준에 명시된 내부 검토 절차가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

제7.4.1조 및 제7.4.2조에도 불구하고,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다음이 제공되지 않는 한 잠정적 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 (a) 잠정적 자격 정지 부과 전 또는 부과 후 적시에 잠정적 청문회 기회; 또는 (b) 임시 정지 조치 부과 후 적시에 제8조에 따른 신속한 심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임시 정지 조치의 부과 또는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제13.2조에 따른 신속한 절차로 항소할 수 있다.

#### 7.4.4 임시 정지 조치의 자발적 수락

선수들은 다음 중 늦은 시점 이전에 자발적으로 잠정적 자격 정지를 수락할 수 있다: (i) B 샘플 결과 보고(또는 B 샘플 포기)일로부터 10일 경과 시점 또는 기타 도핑규칙 위반 통지일로부터 10일 경과 시점, (ii) 해당 보고 또는 통지 이후 선수가 최초로 경기 참가한 날 중 늦은 시점. 기타 관련자는 도핑규칙 위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잠정적 자격정지를 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수락 시, 잠정적 자격정지는 제7.4.1조 또는 제7.4.2조에 따라 부과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하게 처리된다. 다만, 임시 정지 처분을 자발적으로 수락한 후 언제든지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는 해당 수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는 임시 정지 기간 중 이미 이행한 기간에 대한 어떠한 공제도 받지 못한다.

7.4.5 A 샘플 부정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잠정적 자격 정지가 부과된 후, 선수 또는 FIAS가 요청한 B 샘플 분석에서 A 샘플 분석 결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제2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잠정적 자격 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선수 또는 선수의 팀이 제2.1조 위반으로 인해 대회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후속 B 샘플 분석 결과가 A 샘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대회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선수 또는 팀이 재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해당 선수 또는 팀은 대회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 7.5 결과 관리 결정

FIAS의 결과 관리 결정 또는 판정은 특정 지역이나 FIAS 종목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루어 결정해야 한다: (i) 도핑 규칙 위반이 발생했는지 또는 잠정적 자격 정지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결정의 사실적 근거, 그리고 위반된 구체적인 조항들, 그리고 (ii) 도핑규칙 위반으로 인한 모든 결과(제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실격, 메달 또는 상금 박탈, 자격정지 기간(및 그 시작일), 재정적 결과 포함).<sup>34</sup>

#### 7.6 결과 관리 결정 통지

#### 7.7 스포츠 은퇴<sup>35</sup>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FIAS의 결과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은퇴하는 경우, FIAS는 결과 관리 절차를 완료할 권한을 보유한다.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결과 관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은퇴하고,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시점에 FIAS가 그에 대한 결과 관리 권한을 가졌을 경우, FIAS는 결과 관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제 8 조 결과 관리: 공정한 심문 권리 및 심문 결정 통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FIAS는 규정 및 결과 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운영상 독립적인 심문 패널을 통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정한 심문을 제공해야 한다.

FIAS는 단독 재량으로 제8조 책임(1심 심문, 심문 포기 및 결정)을 위임된 제3자 또는 CAS 반도핑 분과(CAS ADD)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된 제3자 또는 CAS ADD의 1심 심문 절차 규칙이 아래 명시된 규칙과 상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경우, 위임된 제3자 또는 CAS ADD의 절차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sup>36</sup> 다만, 위임된 제3자 또는 CAS ADD는

---

<sup>34</sup> 성적 관리 결정에는 잠정적 자격 정지가 포함된다.

FIAS의 각 결정은 반도핑 규정 위반 여부와 위반으로 인한 모든 결과(제10.1조에 따른 실격 제외, 이는 해당 경기의 심판 기관에 위임됨)를 다루어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의 부과 사항은 모든 국가의 모든 스포츠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기 중 채취된 검체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선수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선수의 경기 내 획득한 성적은 제9조에 따라 실격 처리되며, 검체 채취일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획득한 선수의 기타 모든 경기 성적 또한 제10.10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부정적 분석 결과가 대회 내 검사에서 발생한 경우, 시료 채취 전 해당 대회에서 선수의 다른 개별 성적도 제10.1조에 따라 실격 처리될지 여부는 주요 대회 조직의 책임 하에 결정된다.

<sup>35</sup>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어느 반도핑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기 전의 행위는 반도핑 규정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나,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스포츠 기구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sup>36</sup> 예를 들어, 국제삼보연맹(FIAS)이 1심 심리를 CAS 반도핑 분과(CAS ADD)에 위임하는 경우, CAS ADD

항상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운영상 독립적인 청문 패널이 코드 및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정한 청문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8.1 공정한 청문회

### 8.1.1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운영상 독립적인 청문 패널

8.1.1.1 FIAS는 본 반도핑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반도핑 규칙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결정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 심판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FIAS는 또한 제8조 1항 4호에 따라 사례별로 위임된 제3자에게 이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8.1.1.2 FIAS는 FIAS 청문 패널이 이해 상충이 없도록 보장하고, 그 구성, 임기, 전문 경험, 운영상 독립성 및 적절한 재원이 결과 관리 국제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8.1.1.3 FIAS 또는 그 계열사(예: 국가 연맹 또는 연합)의 이사회 구성원, 직원, 위원회 구성원, 자문위원 및 관계자, 그리고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사전 심판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FIAS 청문 패널의 구성원 및/또는 서기(해당 서기가 심의 과정 및/또는 결정문 작성에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로 임명될 수 없다. 특히, 위원 중 누구도 동일한 사건에서 TUE 신청, 결과 관리 결정 또는 항소를 이전에 검토한 적이 없어야 한다.

8.1.1.4 FIAS 청문 패널은 독립적인 의장과 세(3)명의 다른 독립 위원으로 구성된다.

8.1.1.5 각 위원은 법률, 스포츠, 의학 및/또는 과학 전문성을 포함한 필수적인 반도핑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된다. 각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한 번에 한해 재임명될 수 있다.

8.1.1.6 FIAS 청문 패널은 FIAS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청문 및 결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8.1.2 청문 절차

8.1.2.1 FIAS가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

절차 규칙이 본 반도핑 규정 제8조의 절차 규칙과 상충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CAS ADD 절차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통지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제8.3.1조 또는 제8.3.2조에 따라 심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국제 결과 관리 기준(ISRM)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와 판결을 위해 FIAS 청문 패널로 회부되어야 한다.

8.1.2.2 위원장은 해당 사건 심리를 위해 위원장 포함 최대 3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사건 심리 시 위원 중 1명은 3년 이상의 관련 법률 경력을 가진 자격을 갖춘 변호사여야 하며, 다른 1명은 3년 이상의 관련 의료 경력을 가진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여야 한다.

8.1.2.3 의장이 FIAS 청문 패널 위원으로 임명된 각 위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정 중 본 선언서에 공개된 사항 외에 어느 당사자의 관점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선언하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8.1.2.4 본 반도핑 규정에 적용되는 선수 및 기타 인원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청문회는 FIAS 청문 패널이 허용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sup>37</sup>

8.1.2.5 WADA,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국가 연맹 및 국가 반도핑 기구는 관찰자로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FIAS는 진행 중인 사건의 현황 및 모든 심리의 결과에 대해 그들에게 완전히 알릴 의무가 있다.

## 8.2 결정 통지

8.2.1 심의 종료 시 또는 그 직후, FIAS 심의 패널은 국제 결과 관리 기준 제9조에 부합하는 서면 결정을 발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결정의 완전한 사유, 부과된 자격 정지 기간, 제10.10조에 따른 결과 실격 및 해당되는 경우 최대 잠재적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8.2.2 FIAS는 해당 결정을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와 제13조 2.3항에 따른 항소권을 가진 다른 반도핑 기구에 통지하고 즉시 ADAMS에 보고해야

---

<sup>37</sup> 예를 들어, 주요 대회 직전에 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핑규칙 위반 사건의 해결이 선수의 대회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대회 진행 중 사건 해결이 선수의 성적 유효성 또는 대회 계속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다. 이 결정은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 8.3 심문 포기

8.3.1 반도핑 규정 위반이 주장된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심문을 포기하고 FIAS가 제안한 제재에 동의할 수 있다.

8.3.2 다만, 반도핑 규정 위반이 주장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FIAS가 위반을 주장하는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한(20일 이내) 내에 해당 주장을 반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은 청문회를 포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제안된 제재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8.3.3 제8.3.1조 또는 제8.3.2조가 적용되는 경우, FIAS 청문 패널에 의한 청문은 필요하지 않다. 대신 FIAS는 국제 결과 관리 기준 제9조에 부합하는 서면 결정을 즉시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정의 완전한 사유, 부과된 자격 정지 기간, 제10.10조에 따른 결과 실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최대 잠재적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8.3.4 FIAS는 해당 결정을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 및 제13.2.3조에 따른 항소권을 가진 기타 반도핑 기구에 통지하고, 이를 즉시 ADAMS에 보고해야 한다. FIAS는 제14.3.2조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개해야 한다.

### 8.4 CAS에서의 단일 심판

국제급 선수, 국가급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도핑규칙 위반 혐의는 선수 또는 기타 개인, FIAS(제7조에 따른 결과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및 WADA의 동의 하에 CAS에서 직접 단일 심리를 통해 심리될 수 있다.<sup>38</sup>

## 제 9 조 개인 성적의 자동 실격

개인 종목에서 경기 중 검사 관련 도핑 규정 위반은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결과의 자동 실격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메달, 포인트, 상금 몰수 포함)가

---

<sup>38</sup> 경우에 따라 국제 또는 국가 차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한 후 CAS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본 조에서 명시된 모든 당사자가 단일 심리로 자신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 또는 반도핑 기구가 두 차례의 심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반도핑 기구는 CAS 심리에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의 어떠한 내용도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와 FIAS(결과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합의에 의해 항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포기는 해당 합의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규정상 항소권이 있는 다른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sup>39</sup>

## 제 10 조 개인에 대한 제재

### 10.1 도핑 규정 위반 발생 시 해당 경기 결과 실격

10.1.1 경기 중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반도핑 규정 위반은, 해당 경기의 운영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제10.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선수의 모든 개인 성적에 대한 실격 처리 및 모든 메달, 점수 및 상금의 박탈을 포함한 모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회 내 다른 경기 결과의 실격 여부를 고려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는, 예를 들어 선수의 반도핑 규정 위반의 중대성 및 해당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있다.<sup>40</sup>

10.1.2 선수가 위반에 대해 과실이나 태만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다른 대회에서의 개인 성적은 실격 처리되지 않는다. 단, 반도핑 규정 위반이 발생한 대회 이외의 대회에서의 선수 성적이 해당 선수의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0.2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또는 소지에 대한 자격 정지

제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 위반에 대한 자격 정지 기간은 제10조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재적 취소, 감경 또는 정지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다:

10.2.1 제10.2.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4년(4)으로 한다:

10.2.1.1 도핑규칙 위반이 특정물질 또는 특정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가 해당 도핑규칙 위반이 고의적이지

---

<sup>39</sup> 단체 종목의 경우, 개인 선수가 받은 모든 상은 실격 처리된다. 다만, 팀의 실격 처리는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체 종목이 아니지만 팀에 상이 수여되는 종목에서, 한 명 이상의 팀원이 도핑 규칙 위반을 저질렀을 때 팀에 대한 실격 또는 기타 징계 조치는 해당 국제연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up>40</sup> 제9조는 선수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단일 경기(예: 100m 배영)의 결과만 실격 처리하는 반면, 본 조항은 해당 대회(예: 수영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모든 경기의 모든 결과에 대한 실격 처리를 초래할 수 있다.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sup>41</sup>

10.2.1.2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특정 물질 또는 특정 물질과 관련되고 FIAS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고의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0.2.2 제10.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10.2.4.1조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은 2년(2)으로 한다.

10.2.3 제10.2조에서 사용된 “고의적”이라는 용어는, 자신이 도핑규칙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도핑규칙위반을 구성하거나 초래할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백히 그 위험을 무시한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중 금지된 물질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로 인한 도핑규칙위반은, 해당 물질이 특정물질인 경우 “고의적”이 아니라고 추정되나 반증 가능하며, 그러한 물질이 경기 외 금지된 물질인 경우 “고의적”이 아니라고 추정되나 반증 가능하며, 경기 중 금지된 물질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로 인한 도핑규칙위반은 경기 중 금지된 물질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로 인한 반도핑 규정 위반은 해당 물질이 특정 물질이며 선수가 금지 물질이 경기 외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반박 가능한 추정 하에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경기 중 금지된 물질에 대한 부정적 분석 결과로 인한 반도핑 규정 위반은 해당 물질이 특정 물질이 아니며, 선수가 금지 물질이 스포츠 성과와 무관한 상황에서 경기 외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up>42</sup>

10.2.4 제10.2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도핑 규정 위반이 남용 물질과 관련된 경우:

10.2.4.1 선수가 해당 물질의 섭취 또는 사용이 경기 외에서 발생했으며 스포츠 경기력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또한, 본 제10.2.4.1조에 따라 산정된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가 FIAS가 승인한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

<sup>41</sup> 이론적으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금지 물질이 체내에 유입된 경로를 입증하지 않고도 도핑 규정 위반이 고의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2.1조에 따른 도핑 사건에서 선수가 금지 물질의 출처를 입증하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sup>42</sup> 제10.2.3조는 제10.2조 적용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고의적”의 정의를 제시한다.

만족스럽게 완료할 경우 1개월로 감경될 수 있다. 본 제10.2.4.1조에 정해진 자격정지 기간은 제10.6조의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도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sup>43</sup>

10.2.4.2 경기 중 섭취, 사용 또는 소지가 발생한 경우, 선수가 해당 섭취, 사용 또는 소지의 맥락이 스포츠 경기력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섭취, 사용 또는 소지는 제10.2.1조의 목적상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10.4조에 따른 가중 사유 판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10.3 기타 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 정지

제10.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 정지 기간은 제10.6조 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0.3.1 제2.3조 또는 제2.5조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i) 시료 채취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선수가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ii) 기타 모든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 기간 감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2년에서 4년 사이의 범위로 정한다; 또는 (iii)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대 2년에서 최소 견책 및 자격정지 기간 없음 사이의 범위로 한다.

10.3.2 제2.4조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1)까지 감경될 수 있는 2년(2)으로 한다. 단, 경기 직전 행방 변경 등의 행태가 반복되어 해당 선수가 약물 검사에 응하지 않으려 했다는 중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서 정한 2년과 1년 사이의 유연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

<sup>43</sup> 치료 프로그램의 승인 여부 및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완료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FIAS의 단독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은 FIAS가 “가짜” 치료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승인하기 위해 자체 판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 치료 프로그램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WADA가 허용 가능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3.3 제2.7조 또는 제2.8조 위반의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4년에서 평생 자격 정지까지로 한다.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제2.7조 또는 제2.8조 위반은 특히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특정 물질 이외의 위반에 대해 선수 지원 인원이 저지른 경우 해당 선수 지원 인원에 대해 평생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또한,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중대한 위반으로 비스포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관할 행정, 전문 또는 사법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sup>44</sup>

10.3.4 제2.9조 위반 시 부과되는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2년에서 평생 자격정지까지로 한다.

10.3.5 제2.10조 위반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기간이 2년으로 하며,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과실 정도 및 사건의 기타 상황에 따라 최소 1년까지 감경될 수 있다.<sup>45</sup>

10.3.6 제2.11조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위반 심각성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종신 자격정지까지 부과된다.<sup>46</sup>

#### 10.4 자격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중 사유

FIAS가 제2.7조 (유통 또는 유통 시도), 2.8조(투여 또는 투여 시도), 2.9조(공모 또는 공모 시도) 또는 2.11조(선수 또는 기타 인원의 신고 방해 또는 보복 행위) 위반을 제외한 도핑규칙 위반 사건에서 가중사정이 존재하여 표준 제재보다 긴 자격정지 기간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고의로 도핑규칙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반의 심각성과 가중사정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에 최대 2년의 추가 자격정지 기간이 가중된다.<sup>47</sup>

---

<sup>44</sup> 선수에게 도핑을 시키거나 도핑을 은폐하는 데 참여한 자들은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보다 더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스포츠 조직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자격 인증, 회원 자격 및 기타 스포츠 혜택에 대한 자격 박탈로 제한되므로, 선수 지원 인력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도핑 억제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sup>45</sup> 제2.10조에 언급된 "기타 인물"이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는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sup>46</sup> 제2.5조(조작) 및 제2.11조(당국 신고 방해 또는 보복 행위)를 동시에 위반한 행위는 더 중한 제재가 적용되는 위반 사항을 기준으로 제재한다.

<sup>47</sup> 제2.7조(밀매 또는 밀매 시도), 제2.8조(투여 또는 투여 시도), 2.9조(공모 또는 공모 시도), 2.11조(선수 또는 기타 인원의 당국 신고 방해 또는 보복 행위) 위반은 이미 가중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생

## 10.5 과실 또는 태만 없음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면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건에서 자신에게 과실 또는 태만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될 자격정지 기간은 면제된다.<sup>48</sup>

## 10.6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 없음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감경

10.6.1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6조 위반에 대한 특정 상황에서의 제재 감경.

제10.6.1조에 따른 모든 감경은 상호 배타적이며 누적되지 않는다.

### 10.6.1.1 지정 물질 또는 지정 방법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지정 물질(남용 물질 제외) 또는 지정 방법과 관련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한 견책 및 자격정지 기간 없이, 최대 2년의 자격정지로 한다.

### 10.6.1.2 오염된 제품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없음과 검출된 금지 물질(남용 물질 제외)이 오염된 제품에서 유래했음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한 경고 및 자격정지 기간 없음에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기간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sup>49</sup>

---

자격 정지까지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된 제재가 적용되므로 제10.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sup>48</sup> 본 조항 및 제10.6.2조는 제재 부과에만 적용되며, 도핑규칙 위반 발생 여부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수 본인이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경쟁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방해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반대로, 과실 또는 태만 없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잘못 표시되거나 오염된 비타민 또는 영양 보충제로 인한 양성 검사 결과(선수들은 섭취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제2조 제1항), 보충제 오염 가능성에 대해 경고받았다); (b) 선수의 주치의나 트레이너가 선수에게 알리지 않고 금지 물질을 투여한 경우(선수는 의료진 선택과 금지 물질 투여 불가 통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 (c) 선수의 배우자, 코치 또는 선수의 관계자 집단 내 다른 인물에 의한 선수의 음식 또는 음료에 대한 방해 행위 (선수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것과 자신의 음식 및 음료 접근을 허용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그러나 특정 사례의 고유한 사실에 따라, 언급된 예시 중 어느 것이든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 없음에 근거하여 제10.6조에 따른 감경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

<sup>49</sup> 본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검출된 금지 물질이 오염된 제품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 없음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선수들은 영양 보충제 복용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복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추가로 유의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 없음에 근거한 제재 감경은 선수가 오염된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높은 수준의

### 10.6.1.3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가 남용 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고, 해당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가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최소한 2년 자격정지로 한다. 이는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10.6.2 제10.6.1조 적용을 넘어서는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 없음의 적용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제10.6.1조가 적용되지 않는 개별 사례에서 자신이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0.7조에 규정된 추가 감경 또는 면제 조항에 따라,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나, 단, 감경된 자격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 미만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이 종신인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감경 기간은 8년 미만일 수 없다.<sup>50</sup>

## 10.7 과실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또는 기타 결과의 면제, 감경 또는 정지

### 10.7.1 규정 위반 발견 또는 입증에 대한 중대한 기여<sup>51</sup>

10.7.1.1 FIAS는 제13조에 따른 항소 결정 전 또는 항소 기간 만료 전에,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반도핑 기구, 형사 당국 또는 전문직 징계 기관에 중대한 협조를 제공하여 다음 중 하나를 초래한 개별

---

주의를 기울인 경우가 아닌 한, 오염된 제품 사례에서 거의 적용된 바 없다. 선수에게 금지 물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선수가 실제로 오염된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어, 선수가 도핑 통제 양식에 이후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일정한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나 호수 물과 같은 "비제품"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 부정적 분석 결과가 발생했으나, 합리적인 사람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0조 제5항에 따른 과실 또는 태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sup>50</sup> 제10.6.2조는 고의가 도핑규칙 위반의 요소가 되는 조항(예: 제2.5조, 제2.7조, 제2.8조, 2.9 또는 2.11) 또는 특정 제재의 요소가 되는 경우(예: 제10.2.1조) 또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과실 정도에 따라 조항에 이미 자격정지 범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sup>51</sup>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밝히려는 선수, 선수 지원 인원 및 기타 관계자의 협력은 깨끗한 스포츠에 중요하다.

사건에서 부과된 제재(실격 및 의무적 공개 제외)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i) 다른 사람의 반도핑 규정 위반을 반도핑 기구가 발견하거나 제기하는 결과; 또는 (ii)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 또는 전문직 규범 위반을 형사 또는 징계 기관이 발견하거나 제기하는 결과이며,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결과 관리 책임이 있는 FIAS 또는 다른 반도핑 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iii) WADA가 서명 기관, (iv) WADA의 승인을 받아, 도핑 이외의 스포츠 무결성 위반으로 인한 형사 범죄 또는 전문직 또는 스포츠 규칙 위반을 형사 또는 징계 기관이 제기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항소 결정 후 또는 항소 기간 만료 후, FIAS는 WADA의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한 결과의 일부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의 정지 범위는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저지른 반도핑 규정 위반의 심각성과,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스포츠 내 도핑 근절 노력, 규정 미준수 및/또는 스포츠 무결성 위반에 제공한 중대한 협력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의 4분의 3을 초과하여 정지할 수 없다.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이 종신인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정지되지 않은 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에는 본 반도핑 규정 제10.9.3.2조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당한 협조를 제공하려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요청할 경우, FIAS는 해당 선수 또는 인물이 불이익 면제 계약(Without Prejudice Agreement)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협력 지속 및 결과 정지 근거가 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대한 협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FIAS는 원래의 결과를 재개한다. FIAS가 정지된 결과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거나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항소할 권한이 있는 모든 인물이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10.7.1.2 선수 및 기타 인물이 반도핑 기구에 실질적 협조를 제공하도록 더욱 장려하기 위해, FIAS의 요청 또는 반도핑 규정 위반 또는 기타 규정 위반을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주장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요청에 따라, WADA는 결과 관리 절차의 모든 단계(제13조에 따른 항소 결정 이후 포함)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 및 기타 결과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지를 합의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WADA는 본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것보다 더 큰 자격정지 기간 및 기타 결과의 정지를 합의하거나, 심지어 자격정지 기간 없음, 의무적 공개 없음 및/또는 상금 반환 또는 벌금 또는 비용 지불 없음에 합의할 수 있다. WADA의 승인은 본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제재의 재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본 제10.7.1.2조와 관련된 WADA의 결정은 항소할 수 없다.

10.7.1.3 FIAS가 중대한 협조로 인해 적용 가능한 제재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제14.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13.2.3조에 따른 항소권을 가진 다른 반도핑 기구들에게 해당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WADA가 반도핑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WADA는 FIAS가 중대한 협력 협정의 공개 또는 제공되는 중대한 협력의 성격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적절한 기밀 유지 협정을 체결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10.7.2 기타 증거 없이 도핑 규칙 위반을 자백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도핑 규칙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샘플 채취 통지를 받기 전에(또는 제2.1조 이외의 도핑 규칙 위반의 경우, 제7조에 따른 위반 인정 첫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도핑 규칙 위반을 자백하고, 그 자백이 위반 시점에서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제7조에 따른 최초 통지를 받기 전에) 도핑규칙 위반을 자진하여 인정하고, 그 시점에서 해당 인정만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감경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절반 이하로 감경될 수 없다.<sup>52</sup>

#### 10.7.3 제재 감경 사유 중복 적용

---

<sup>52</sup> 본 조항은 반도핑 기구가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진하여 도핑규칙 위반을 시인할 경우 적용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적발 직전이라고 판단한 후에 이루어진 시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 폭은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제10.5조, 제10.6조 또는 제10.7조의 두 가지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재 감경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감경 또는 정지를 적용하기 전에, 원래 적용될 자격정지 기간은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제10.7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 또는 유예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감경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적용될 자격정지 기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감경되거나 유예될 수 없다.

## 10.8 결과 관리 협정

### 10.8.1 조기 자백 및 제재 수락에 따른 특정 반도핑 규칙 위반에 대한 1년 감경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FIAS로부터 4년 이상(제10.4조에 따라 주장된 자격정지 기간 포함)의 자격정지 기간이 주장되는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된 자격정지 기간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FIAS가 주장한 자격정지 기간에서 1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본 제10.8.1조에 따라 주장된 자격정지 기간에서 1년의 감경을 받은 경우, 다른 어떠한 조항으로도 주장된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sup>53</sup>

### 10.8.2 사건 해결 합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FIAS로부터 도핑규칙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인정한 후, FIAS와 WADA가 단독 재량으로 수용 가능한 제재에 동의하는 경우: (a)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FIAS와 WADA가 주장된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적용, 위반의 심각성,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과실 정도 및 위반을 인정한 신속성을 평가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b) 자격정지 기간은

---

<sup>53</sup> 예를 들어, FIAS가 선수가 제2조 제1항(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사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이 4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3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락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추가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청문회 없이 사건이 해결된다.

시료 채취일 또는 다른 도핑규칙 위반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 중 더 이른 날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이 적용되는 각 사례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는 제재 부과를 수락한 날짜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가 이후 이를 존중한 잠정적 자격 정지 조치 중 더 이른 날짜로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합의된 자격정지 기간의 최소 절반을 이행해야 한다. WADA와 FIAS가 사건 해결 합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 및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 정도와 시작일은 심판 기관이 결정하거나 검토할 사항이 아니며, 제13조에 따른 항소 대상이 아니다.

본 조항에 따라 사건 해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요청할 경우, FIAS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불이익 없는 합의서(Without Prejudice Agreement)에 따라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sup>54</sup>

## 10.9 중복 위반

### 10.9.1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반도핑 규정 위반

10.9.1.1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의 두 번째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다음 중 더 긴 기간으로 한다:

(a) 6개월의 자격정지 기간; 또는

(b) 다음 범위 내의 자격정지 기간:

(i) 첫 번째 도핑 규정 위반에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과 두 번째 위반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간주하여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합계, 그리고

(ii) 두 번째 위반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간주하여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두 배.

이 범위 내의 자격정지 기간은 제2차 위반과 관련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과실 정도 및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10.9.1.2 세 번째 도핑 규정 위반은 제10.5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2.4조 위반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종신 자격정지 처분을 초래한다. 이러한 특정 사례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이 8년에서 종신

---

<sup>54</sup> 본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감경 또는 가중 사유는 사건 해결 합의서에 명시된 제재 결정 시 고려되며, 해당 합의서의 조건을 넘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격정지까지로 한다.

10.9.1.3 제10.9.1.1조 및 제10.9.1.2조에 따라 정해진 자격정지 기간은 제10.7조의 적용에 따라 추가로 감경될 수 있다.

10.9.2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과실 또는 태만 없음을 입증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본 제10.9조의 목적상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제10.2.4.1조에 따라 제재된 도핑방지규칙 위반은 제10.9조의 목적상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9.3 특정 잠재적 중복 위반에 대한 추가 규정

10.9.3.1 제10.9조에 따른 제재 부과 목적상, 제10.9.3.2조 및 제10.9.3.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IAS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또는 FIAS가 첫 번째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 추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위반은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된다. FIAS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위반들은 하나의 단일 첫 번째 위반으로 함께 간주되며, 부과되는 제재는 가중 사정 적용을 포함하여 더 중한 제재가 부과되는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 도핑규칙 위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경기의 결과는 제10.10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sup>55</sup>

10.9.3.2 FIAS가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통지 전에 추가 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고, 추가 위반이 최초 통지 위반 전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경우, 추가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해당 위반이 독립된 첫 번째 위반인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이 자격정지 기간은 이전에 통지된 위반에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과 병행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행된다. 본 제10.9.3.2조가 적용되는 경우, 위반 사항들을 종합하여 제10.9.1조 목적상 단일 위반으로 간주한다.

10.9.3.3 FIAS가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주장된 기본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관련된 도핑통제 과정에서 제2.5조 위반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

<sup>55</sup> 제재 부과 후, FIAS가 최초 도핑규칙 위반 통보 이전에 발생한 도핑규칙 위반 관련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예: FIAS는 두 건의 위반이 동시에 심판되었을 경우 부과될 수 있었던 제재를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중 사정 사항의 적용도 포함된다.

경우, 제2.5조 위반은 독립된 첫 번째 위반으로 취급되며, 해당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기본적인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있는 경우)과 병행하여 이행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행된다. 본 제10.9.3.3조가 적용되는 경우, 위반 사항들은 제10.9.1조의 목적상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10.9.3.4 FIAS가 선수 또는 관계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도핑규정 위반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복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동시 집행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행된다.

#### 10.9.4 10년 기간 내 다중 도핑 규정 위반

제10.9조의 목적상, 각 도핑 규정 위반은 동일한 10년 기간 내에 발생해야만 다중 위반으로 간주된다.

10.10 도핑 규칙 위반 행위 발생 또는 시료 채취 이후 대회에서의 성적 실격 제9조에 따른 양성 반응 시료가 발생한 대회에서의 성적 자동 실격에 더하여, 해당 선수의 양성 시료 채취일(경기 중이든 경기 외이든) 또는 기타 도핑 규칙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또는 기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잠정적 자격 정지 또는 자격 박탈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의 모든 경기 결과는, 공정성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결과적 결과(메달, 포인트 및 상금 몰수 포함)와 함께 실격 처리된다.<sup>56</sup>

#### 10.11 몰수된 상금

FIAS가 도핑 규정 위반으로 몰수된 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상금을 몰수당한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선수들에게 배분 및 지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57</sup>

#### 10.12 재정적 결과

10.12.1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FIAS는 재량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a)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

<sup>56</sup> 본 반도핑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반도핑 규칙 위반을 저지른 개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깨끗한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해당 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up>57</sup> 본 조항은 FIAS가 몰수된 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FIAS가 몰수된 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원래 상금을 받아야 했던 선수(들)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상금을 배분하고 분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FIAS와 선수들이 합의한 대로 회수된 몰수 상금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도핑방지규칙 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거나 및/또는 (b)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최대 1000 스위스 프랑(CHF)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이 벌금 부과 조치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이미 적용 가능한 최대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10.12.2 재정적 제재의 부과 또는 FIAS의 비용 회수는 본 반도핑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 또는 기타 제재를 감경하는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 10.13 자격정지 기간의 시작

선수에게 이미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된 경우,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은 현재의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정지를 명하는 최종 심판 결정일로부터 시작하거나, 심판이 면제되거나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수락되거나 달리 부과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 10.13.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

심판 절차 또는 도핑 통제의 다른 측면에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지연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FIAS 또는 FIAS 심판 패널은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시료 채취일 또는 다른 반도핑 규정 위반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짜로 소급하여 더 이른 날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소급 적용된 자격정지 포함) 동안 달성한 모든 경기 결과는 실격 처리된다.<sup>58</sup>

#### 10.13.2 잠정적 자격 정지 또는 이행된 자격 정지 기간의 공제

10.13.2.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잠정적 자격 정지를 준수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해 해당 잠정적 자격 정지 기간을 공제받아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잠정적 자격 정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이행된 잠정적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해

---

<sup>58</sup>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건에서, 도핑 방지 기관이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고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 조항이 제공하는 제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유연성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후 항소된 결정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이 이행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이행된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해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10.13.2.2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FIAS로부터 서면으로 잠정적 자격 정지를 자발적으로 수락한 후 이를 준수할 경우, 해당 자발적 잠정적 자격 정지 기간은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해 공제된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임시 정지 처분 자발적 수락 사본은 제14.1조에 따라 주장된 반도핑 규정 위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각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sup>59</sup>

10.13.2.3 선수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한 공제는, 선수 자격 정지 또는 자발적 선수 자격 정지 효력 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선수가 경기 참가를 포기했는지 또는 팀에 의해 출전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지 않는다.

#### 10.14 선수 자격 정지 또는 선수 자격 정지 기간 중의 지위

##### 10.14.1 자격정지 또는 잠정적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자격정지 또는 잠정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은 해당 기간 동안 서명단체, 서명단체의 회원 조직, 서명단체 회원 조직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 조직이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활동(승인된 반도핑 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 제외)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서명단체의 회원 조직, 또는 서명단체 회원 조직의 클럽이나 기타 회원 조직이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프로 리그나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대회 조직, 또는 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엘리트급·국가급 스포츠 활동이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4년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된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 4년을 완료한 후, 코드 서명기관 또는 그 회원 기관의 승인 또는 관할권 아래 있지 않은 지역 스포츠 행사에 선수로서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 스포츠 행사가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국가 선수권 대회 또는

---

<sup>59</sup> 선수가 임시 자격 정지를 자발적으로 수락하는 것은 선수의 자백이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수에게 불리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대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거나 해당 대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야 하며,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보호 대상자와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정지 기간이 적용되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FIAS의 약물 검사 및 소재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sup>60</sup>

#### 10.14.2 훈련 복귀

제10.14.1항의 예외로, 선수는 다음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FIAS 또는 기타 서명 기관의 회원 단체인 클럽 또는 기타 단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팀과 함께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1)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 중 마지막 2개월, 또는 (2)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기간.<sup>61</sup>

#### 10.14.3 자격정지 또는 잠정적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위반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제10.14.1조에 명시된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참가 결과는 실격 처리되며, 원래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이 원래 기간의 종료 시점에 추가된다.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경고 조치 포함, 자격정지 기간 없음)은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의 과실 정도 및 사건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참가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최초 자격정지 기간 부과로 이어진 결과 관리(Results Management)를 수행한 반도핑

---

<sup>60</sup> 예를 들어, 아래 제10.14.2조에 따라, 자격정지 선수는 자국 연맹 또는 해당 연맹 소속 클럽,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클럽이 주최하는 훈련 캠프, 시범 경기 또는 연습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자격정지 선수는 비서명국 프로 리그(예: 내셔널 하키 리그, 내셔널 바스켓볼 협회 등), 비서명 국제 대회 조직체 또는 비서명 국가급 대회 조직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10.14.3조에 명시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활동"이라는 용어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조직체의 임원, 이사,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하는 행정적 활동도 포함된다. 한 종목에서 부과된 자격정지는 다른 종목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제15.1조, 결정의 자동적 구속력 참조). 자격정지 기간을 이행 중인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은 해당 기간 중 어떠한 시점에서든 다른 종목에서 코치 또는 선수 지원 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선수에 대한 제2.10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달성된 모든 경기 기록은 FIAS 또는 그 국가 연맹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sup>61</sup> 많은 단체 종목 및 일부 개인 종목(예: 스키 점프, 체조)에서 선수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날 때 경기에 참가할 준비를 하기 위해 혼자서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명시된 훈련 기간 동안, 자격 정지된 선수는 훈련 이외의 제10.14.1조에 명시된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거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기구(Anti-Doping Organization)가 결정한다. 이 결정은 제13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10.14.1조에 규정된 잠정적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이행한 잠정적 자격정지 기간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며, 해당 참가로 인한 성적은 실격 처리된다.

선수 지원인 또는 기타 인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또는 잠정적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위반을 돕는 경우, FIAS는 그러한 지원에 대해 제2조 제9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 10.14.4 자격정지 기간 중 재정적 지원 보류

또한, 제10.5조 또는 제10.6조에 명시된 감경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반도핑 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개인이 수령한 스포츠 관련 재정 지원 또는 기타 스포츠 관련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FIAS 및 그 국가 연맹에 의해 보류된다.

#### 10.15 제재의 자동 공개

각 제재의 필수 구성 요소에는 제14.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 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 11 조 팀에 대한 결과

### 11.1 팀 검사

팀 스포츠를 제외한 팀의 한(1) 명의 구성원이 대회와 관련하여 제7조에 따른 반도핑 규정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대회의 주관 기관은 대회 기간 동안 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절한 표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11.2 팀에 대한 결과

11.2.1 경기 중 검사(In-Competition test)와 관련하여 팀 구성원이 저지른 반도핑 규정 위반은 자동적으로 해당 대회에서 팀이 획득한 결과의 실격(Disqualification)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메달, 포인트 및 상금의 몰수 포함)가 팀 및 그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11.2.2 대회 중 또는 대회와 관련하여 팀 구성원이 저지른 반도핑 규정 위반은 제11.2.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회에서 팀이 획득한 모든 결과의 실격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모든 메달, 점수 및 상금의 박탈 포함)가 팀 및 그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11.2.3 팀의 일원인 선수가 한(1) 경기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도핑 방지 규칙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팀의 다른 구성원이 그 위반에 대해 해당 위반에 대해 과실 또는 태만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기 이외의 다른 경기에서 팀의 결과가 해당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한, 해당 종목의 다른 경기에서 팀의 결과는 실격 처리되지 않는다.

## **제 12 조 FIAS의 타 스포츠 기구에 대한 제재**

FIAS가 관할권 내 국가 연맹 또는 기타 스포츠 기구가 해당 조직 또는 기구의 관할 영역 내에서 본 반도핑 규정을 준수, 이행, 유지 및 집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FIAS는 다음의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2.1 해당 조직 또는 기구의 전체 회원 또는 특정 그룹을 지정된 향후 대회 또는 지정된 기간 내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서 배제한다.

12.2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 또는 기구의 인정, 회원들의 FIAS 활동 참가 자격, 및/또는 해당 조직 또는 기구에 대한 벌금 부과와 관련하여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한다:

12.2.1 해당 단체 또는 기구 소속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12개월 기간 동안 본 반도핑 규정(제2.4조 위반 제외)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a) 해당 단체 또는 기구의 전체 또는 일부 구성원이 최대 2년간 FIAS 활동 참여를 금지당할 수 있으며, 및/또는 (b) 해당 단체 또는 기구에 최대 5000CHF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2.2 제12.2.1조에 명시된 위반 사항 외에, 해당 단체 또는 기구와 관련된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12개월 기간 동안 본 반도핑 규정(제2.4조 위반 사항 제외)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구는 최대 4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2.2.3 해당 단체 또는 기구와 관련된 두 명 이상의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국제 대회 기간 중 도핑방지규칙 위반을 저지른 경우. 이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구는 최대 2500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2.2.4 해당 단체 또는 기구가 FIAS로부터 선수 소재 정보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구는 선수 1인당 최대 1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더불어, 해당 단체 또는 기구의 선수

검사에 소요된 FIAS의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12.3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기타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한다.

12.4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이 소속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본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실험실 수수료, 청문 비용, 출장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FIAS에 상환하도록 의무화한다.

## 제 13 조 결과 관리: 항소<sup>62</sup>

### 13.1 항소 대상 결정

본 코드 또는 본 반도핑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아래 제13.2조부터 제13.7조까지 또는 본 반도핑 규정, 코드 또는 국제 기준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관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은 항소 기간 동안 유효하다.

#### 13.1.1 심사 범위 제한 없음

항소 심사의 범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포함하며, 최초 결정 기관이 심리한 쟁점이나 심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항소 당사자는 최초 심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증거, 법적 주장 및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최초 심문에서 제기되거나 다뤄진 동일한 소송 원인과 동일한 일반적 사실 또는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에 한한다.<sup>63</sup>

#### 13.1.2 CAS는 항소 대상 결정에 대한 존중 의무 없음

CAS는 결정 시 항소 대상 기관이 행사한 재량권에 대해 존중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sup>64</sup>

---

<sup>62</sup>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 절차와 최종 항소를 통해 도핑 방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핑 방지 기구의 도핑 방지 결정은 제14조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이후 WADA를 포함한 지정된 개인 및 기구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 기회가 부여된다. 제13조에 따라 항소권을 가진 이해관계자 및 기구의 정의에는 다른 경쟁자의 실격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수 또는 그 선수의 국가 연맹은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

<sup>63</sup> 개정된 문구는 2015년 규약에 대한 실질적 변경이 아닌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선수에 대한 1심 심리에서 조작 혐의만 제기되었으나 동일한 행위가 공모 혐의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 항소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해당 선수에 대해 조작 및 공모 혐의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sup>64</sup> CAS 절차는 독립적 재심(de novo)이다. 이전 절차는 증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CAS 심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13.1.3 WADA의 내부 구제 절차 소진 의무 없음

WADA가 제13조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고 FIAS 절차 내에서 다른 당사자가 최종 결정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WADA는 FIAS 절차 내 다른 구제 수단을 소진하지 않고도 해당 결정을 CAS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sup>65</sup>

### 13.2 도핑 규정 위반, 결과, 잠정적 자격 정지, 결정 이행 및 권한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

도핑규칙 위반이 발생했다는 결정, 도핑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 부과 또는 결과 미부과 결정, 또는 도핑규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정; 절차상 사유(예: 시효)로 인해 도핑규칙 위반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결정; 은퇴 선수가 제5.6.1조에 따라 경기 복귀를 위해 6개월 사전 통보 요건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WADA의 결정; 코드 제7.1조에 따른 결과 관리(Results Management)를 위임하기로 한 WADA의 결정; FIAS가 부정적 분석 결과 또는 비정형적 결과를 도핑규칙 위반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는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따른 조사 후 도핑규칙 위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 잠정 청문회 결과 잠정적 자격 정지를 부과하거나 해제하기로 한 결정; 국제삼보연맹(FIAS)의 규정 제7.4조 미준수; 국제삼보연맹(FIAS)이 도핑규칙위반 혐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결정; 규정 제10.7.1조에 따른 결과의 정지 또는 정지하지 않음, 또는 결과의 복원 또는 복원하지 않음에 관한 결정; 규정 제7.1.4조 및 제7.1.5조 미준수; 제10.8.1조 미준수; 제10.14.3조에 따른 결정; 제15조에 따른 다른 반도핑 기구의 결정을 FIAS가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 그리고 규정 제27.3조에 따른 결정은 본 제13.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독점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 13.2.1 국제급 선수 또는 국제 대회 관련 항소

국제 대회 참가로 인해 발생한 사건 또는 국제급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결정은 CAS에 독점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sup>66</sup>

---

<sup>65</sup> FIAS 절차의 최종 단계(예: 1차 심의) 이전에 결정이 내려졌고, 어느 당사자도 해당 결정을 FIAS 절차의 다음 단계(예: 관리위원회)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WADA는 FIAS 내부 절차의 잔여 단계를 생략하고 CAS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sup>66</sup> CAS 결정은 중재 판정의 취소 또는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재검토를 제외하고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 13.2.2 기타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을 포함한 항소

제13.2.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 반도핑 기구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항소 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에 관한 규칙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적시에 심리를 진행할 것, 공정하고, 공정하며, 운영상 독립적이고 제도적으로 독립적인 심리 패널을 구성할 것, 해당 개인이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할 것, 그리고 적시에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한 결정을 내릴 것.

항소 시점에 위에서 설명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결정은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에 따라 CAS에 항소할 수 있다.

### 13.2.3 항소 권한이 있는 자

#### 13.2.3.1 국제적 수준의 선수 또는 국제 행사 관련 항소

제13.2.1조에 따른 사건의 경우, 다음 당사자들은 CAS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a) 항소 대상 결정의 당사자인 선수 또는 기타 개인; (b)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방; (c) FIAS; (d) 해당 개인의 거주국 또는 국적 보유국 또는 라이선스 보유국의 국가 반도핑 기구; (e) 해당 결정이 올림픽 대회 또는 패럴림픽 대회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올림픽 대회 또는 패럴림픽 대회 참가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포함), 해당되는 경우 국제 올림픽 위원회 또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및 (f) WADA.

#### 13.2.3.2 다른 선수 또는 다른 사람을 포함한 항소

제13.2.2조에 따른 사건에서 항소 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국가 반도핑 기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나, 최소한 다음 당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a) 항소 대상 결정의 대상이 된 선수 또는 기타 개인; (b)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방; (c) FIAS; (d) 해당 개인의 거주국 또는 국적 보유국 또는 라이선스 보유국의 국가 도핑 방지 기구; (e) 해당 결정이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참가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포함), 해당되는 경우 국제 올림픽 위원회 또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및 (f) WADA.

제13.2.2조에 따른 사건의 경우, WADA,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FIAS는 항소 기구의 결정에 대해 CAS에 항소할 권리도 가진다.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항소 대상 결정의 항소 기구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CAS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CAS가 지시할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 13.2.3.3 통지 의무

CAS 항소 사건의 모든 당사자는 WADA 및 항소권을 가진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항소 사실을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

#### 13.2.3.4 잠정적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항소

본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잠정적 자격 정지 부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해당 잠정적 자격 정지가 부과된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이다.

#### 13.2.3.5 제1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항소

제12조에 따라 FIAS가 내린 결정은 국가 연맹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CAS에 독점적으로 항소될 수 있다.

### 13.2.4 교차 항소 및 기타 후속 항소 허용

규정 하에 CAS에 제기된 사건에서 명시된 피고인에 의한 교차 항소 및 기타 후속 항소는 특별히 허용된다. 본 제13조에 따라 항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교차 항소 또는 후속 항소를 해당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 시까지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sup>67</sup>

## 13.3 FIAS의 적시 결정 미이행

특정 사건에서 FIAS가 WADA가 설정한 합리적 기한 내에 반도핑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WADA는 FIAS가 반도핑 규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CAS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CAS 심판 패널이 도핑 규정 위반이 발생했으며 WADA가 CAS에 직접 항소하기로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WADA가 항소를 진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는 FIAS가 WADA에 상환해야

---

<sup>67</sup> 2011년 이후 CAS 규칙은 선수의 항소 기간이 만료된 후 반도핑 기구가 결정에 항소할 경우 선수의 교차 항소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은 모든 당사자에 대한 완전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다.<sup>68</sup>

#### 13.4 TUE 관련 항소

TUE 결정에 대한 항소는 제4.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독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 13.5 항소 결정 통지

FIAS는 제1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3.2.3조에 따라 항소할 자격이 있는 선수 또는 기타 사람과 다른 반도핑 기구에 항소 결정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 13.6 항소 제기 기한<sup>69</sup>

##### 13.6.1 CAS 항소

CAS 항소 제기 기한은 항소 당사자가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항소 권한이 있으나 항소 대상 결정이 내려진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당사자가 제기하는 항소와 관련하여는 다음이 적용된다:

(a)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는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반도핑 기관으로부터 해당 결정과 관련된 전체 사건 파일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b) 15일 기간 내에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요청을 한 당사자는 파일 수령일로부터 21일 이내에 CAS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WADA가 제기하는 항소의 제출 기한은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 한다:

(a) 항소권을 가진 다른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21일 후, 또는

(b) WADA가 해당 결정과 관련된 완전한 파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후.

##### 13.6.2 제13.2.2조에 따른 항소

국가 반도핑 기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항소를

---

<sup>68</sup> 각 도핑규칙 위반 조사 및 결과 관리의 상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WADA가 CAS에 직접 항소하여 개입하기 전에 FIAS가 결정을 내릴 고정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WADA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FIAS와 협의하고, FIAS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sup>69</sup> CAS 규칙 또는 본 반도핑 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당사자의 항소 기한은 결정문을 수령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항소권은 소멸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상관없이, WADA가 제기하는 항소의 제출 기한은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 한다:

- (a) 항소권을 가진 다른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21일 후, 또는
- (b) WADA가 해당 결정과 관련된 완전한 파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후.

## **제 14 조 기밀 유지 및 보고**

14.1 부정적 분석 결과, 비정형적 결과 및 기타 주장된 반도핑 규정 위반에 관한 정보

14.1.1 선수 및 기타 대상자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 통지

선수 또는 기타 대상자에 대한 도핑규칙 위반 주장 통지는 제7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 관리 과정 중 도핑규칙 위반 혐의 제기 시점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FIAS가 해당 사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선수 또는 기타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단, 선수 또는 기타 대상자가 이미 진행 중인 결과 관리에 대해 통지받은 경우에 한함).

통지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한다. 국가 연맹을 통해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 연맹은 FIAS에 통지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14.1.2 국가 도핑 방지 기구 및 WADA에 대한 도핑 규정 위반 통지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의 국가 도핑 방지 기구 및 WADA에 대한 도핑 규정 위반 주장 통지는 제7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 관리 단계 중 도핑 규정 위반 혐의 제기 시점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FIAS가 해당 사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제13조 2항 3호에 따른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핑 방지 기구에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어야 한다.

14.1.3 도핑 규정 위반 통지의 내용

도핑규칙 위반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의 성명, 국적, 종목 및 해당 종목 내 세부 분야, 선수의 경기 수준, 검사가 경기 중 검사인지 경기 외 검사인지 여부, 시료 채취일, 실험실에서 보고한 분석 결과, 그리고 결과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2.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도핑 규정 위반 통지에는 위반된 규정 및 위반 주장 근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 14.1.4 진행 상황 보고서

제14.1.1조에 따른 도핑규칙 위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의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및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제7조, 제8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수행된 모든 검토 또는 절차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아야 하며, 해당 사안의 해결을 설명하는 신속한 서면 사유 설명 또는 결정을 제공받아야 한다.

#### 14.1.5 기밀 유지

수신 기관은 FIAS가 제14.3조에 따라 공개를 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자(해당 국가 올림픽 위원회, 국가 연맹의 적절한 직원을 포함) 외에는 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14.1.6 FIAS 직원 또는 대리인의 기밀 정보 보호

FIAS는 부정적 분석 결과, 비정형적 결과 및 기타 주장된 반도핑 규정 위반에 관한 정보가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개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IAS는 직원(상근 여부를 불문), 계약자, 대리인, 컨설턴트 및 위임된 제3자가 해당 기밀 정보의 부적절하거나 무단 공개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계약상 기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4.2 도핑규칙 위반 또는 자격정지/임시정지 결정 통지 및 기록 요청

14.2.1 제7.6조, 제8.2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10.14.3 또는 13.5조에 따라 내려진 반도핑 규정 위반 결정 또는 자격정지 또는 잠정적 자격정지 위반 관련 결정에는 해당 결정의 완전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최대 잠재적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이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경우, FIAS는 결정 및 그

근거 사유에 대한 영문 또는 프랑스어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14.2.2 제14.2.1조에 따라 접수된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는 반도핑 기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과 관련된 전체 사건 파일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14.3 공개

14.3.1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게 국제 경기 결과 관리 기준에 따라 통지가 제공되고, 제14.1.2조에 따라 해당 반도핑 기관에 통지가 제공된 후,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통지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의 신원,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관련 위반의 성격, 그리고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잠정적 자격 정지 대상인지 여부는 FIAS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14.3.2 제13.2.1조 또는 제13.2.2조에 따른 항소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해당 항소가 포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제8조에 따른 청문회가 포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도핑규칙 위반 주장이 제10.8조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이의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0.8조에 따라 해결된 경우, 또는 제10.14.3조에 따라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 또는 견책이 부과된 경우, FIAS는 해당 반도핑 사안의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종목, 위반된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의 성명, 관련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해당하는 경우), 부과된 제재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FIAS는 항소 결정에 관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위에서 설명한 정보가 포함된다.<sup>70</sup>

14.3.3 제13.2.1조 또는 제13.2.2조에 따른 항소 결정에서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확정되거나 해당 항소가 포기된 경우, 제8조에 따른 청문회에서 위반이 확정되거나 해당 청문회가 포기된 경우, 도핑방지규칙 위반 주장이 적시에 이의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사건이 해결된 경우, FIAS는 해당 판정 또는 결정을 공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있다.

14.3.4 청문회 또는 항소 후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결정이 항소된 사실은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 자체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은 해당 결정의 대상인

---

<sup>70</sup> 제14.3.2조에서 요구하는 공개가 다른 적용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FIAS의 공개 미이행은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준 제4.1조에 명시된 규정 미준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 FIAS는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의가 얻어진 경우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승인한 편집된 형태로든 전체 결정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4.3.5 공개는 최소한 FIAS 웹사이트에 필수 정보를 게재하고, 1개월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명시된 기간 만료 직후 즉시 삭제된다.

14.3.6 제14.3.1조 및 제14.3.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반도핑 기구, 국가 연맹, WADA 인증 실험실 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도 선수, 기타 인물 또는 그 수행원·대리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거나 이를 인용한 공개 발언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절차 및 과학적 설명에 대한 일반적 기술과는 대조적으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해서는 안 된다.

14.3.7 제14.3.2조에 규정된 의무적 공개는 도핑규칙 위반이 확인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미성년자,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인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가 관련된 사건에서의 선택적 공개는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

#### 14.4 통계 보고

FIAS는 최소한 매년 도핑 통제 활동에 대한 일반 통계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 사본을 WADA에 제공해야 한다.

#### 14.5 도핑 통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준수 모니터링

WADA가 준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 및 도핑 방지 기관 간 관련 도핑 통제 정보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FIAS는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ADAMS를 통해 WADA에 도핑 통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a) 국제급 선수 및 국가급 선수의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데이터,
- (b)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선수를 포함한 선수의 소재 정보,
- (c) 치료용 약물 사용 허가(TUE) 결정, 및
- (d) 결과 관리 결정, 해당 국제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14.5.1 조정된 검사 배분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반도핑 기구 간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며,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필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FIAS는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명시된

요건 및 기한에 따라 도핑 통제 양식을 ADAMS에 입력하여 모든 경기 중 및 경기 외 검사를 WADA에 보고해야 한다.

14.5.2 WADA의 치료용 면제(TUE)에 대한 감독 및 항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IAS는 치료용 면제에 관한 국제 기준에 명시된 요건 및 기한에 따라 ADAMS를 사용하여 모든 TUE 신청, 결정 및 증빙 서류를 보고해야 한다.

14.5.3 결과 관리에 대한 WADA의 감독 및 항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IAS는 결과 관리 국제 기준에 명시된 요건 및 기한에 따라 다음 정보를 ADAMS에 보고해야 한다: (a) 부정적 분석 결과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 통지 및 관련 결정; (b) 부정적 분석 결과가 아닌 기타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통지 및 관련 결정; (c) 소재 정보 미제출; 및 (d) 잠정적 자격 정지 부과, 해제 또는 재개 결정.

14.5.4 본 조항에 명시된 정보는 해당 규칙에 따라 적절할 경우 선수, 선수의 국가 반도핑 기구 및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기타 반도핑 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 14.6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14.6.1 FIAS는 코드, 국제 기준(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포함), 본 반도핑 규정 하에 반도핑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선수 및 기타 개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14.6.2 전항의 규정을 제한하지 않으며, FIAS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유효한 법적 근거에 따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b) 본 반도핑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참가자 또는 개인에게, 해당 개인정보가 본 반도핑 규칙의 이행을 목적으로 FIAS 및 기타 기관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형식으로 통지할 것

(c) FIAS가 참가자 또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제3자 대리인(위임된 제3자 포함)이 해당 정보의 기밀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기술적·계약적 통제를 받도록 보장한다.

## 제 15 조      결정의 이행

### 15.1 반도핑 기구의 결정에 대한 자동적 구속력

15.1.1 반도핑 기구, 항소 기관(규정 제13.2.2조) 또는 CAS가 내린 반도핑 규정 위반 결정은 해당 절차 당사자에게 통지된 후, 아래에 설명된 효력을 지니며 절차 당사자를 넘어 FIAS 및 그 국가 연맹, 그리고 모든 스포츠 분야의 모든 기구에 대해 자동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15.1.1.1 상기 기관 중 어느 하나가 임시 자격 정지(임시 청문회 개최 후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임시 자격 정지를 수락하거나 제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제공된 임시 청문회, 신속 청문회 또는 신속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를 부과하는 결정은 자동으로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참여를 금지한다 (제10.14.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기관의 관할권 내 모든 스포츠에서 참가하는 것을 자동으로 금지한다.

15.1.1.2 청문회 개최 또는 포기 후 상기 기관 중 어느 하나가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서명 당사자의 관할권 내 모든 스포츠에 참여(제10.14.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하는 것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15.1.1.3 상기 기관 중 어느 하나가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한 결정은 모든 서명국에 자동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15.1.1.4 상기 기관 중 어느 하나가 제10.10조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경기 결과를 실격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서명국의 관할권 내에서 획득한 모든 결과가 자동으로 실격 처리된다.

15.1.2 FIAS 및 그 국가 연맹은 제15.1.1조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 및 그 효력을, FIAS가 해당 결정에 대한 실제 통지를 수령한 날 또는 결정이 ADAMS에 등록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추가 조치 없이 인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5.1.3 반도핑 기구, 국가 항소 기관 또는 CAS가 제재를 정지하거나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FIAS 및 그 국가 연맹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구속력을 가지며, FIAS가 해당 결정에 대한 실제 통지를 수령한 날 또는 결정이 ADAMS에 등록된 날 중 더 빠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15.1.4 다만, 제15.1.1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기간 중 신속

절차로 주요 대회 조직위원회가 내린 반도핑 규정 위반 결정은 해당 주요 대회 조직위원회의 규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비신속 절차에 따른 항소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IAS 또는 그 국가 연맹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sup>71</sup>

#### 15.2 기타 도핑 방지 기구의 결정 이행

FIAS 및 그 국가 연맹은 상기 제15.1.1조에 명시되지 않은 도핑 방지 기구가 내린 기타 도핑 방지 결정(예: 잠정 청문회 전 잠정적 자격 정지 또는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락)을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sup>72</sup>

#### 15.3 비서명 기관의 결정 이행

도핑방지규정 비서명 기관의 반도핑 결정은, FIAS가 해당 결정이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반도핑 규칙이 그 외 측면에서 도핑방지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FIAS 및 그 국가 연맹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sup>73</sup>

---

<sup>71</sup> 예를 들어, 주요 대회 조직의 규칙이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게 신속한 CAS 항소 또는 일반 CAS 절차에 따른 항소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신속 항소 옵션을 선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대회 조직의 최종 결정 또는 판정은 다른 서명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sup>72</sup>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반도핑 기구의 결정은 다른 서명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행되며, 서명국의 별도 결정이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 반도핑 기구가 선수를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은 국제 연맹 수준에서 자동 효력을 발생한다. 명확히 하자면, "결정"이란 국가 반도핑 기구가 내린 결정을 의미하며, 국제 연맹이 별도로 내릴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수 측이 임시 자격 정지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주장은 오직 국가 반도핑 기구를 상대로만 제기될 수 있다. 제15.2조에 따른 반도핑 기구 결정의 이행은 각 서명국의 재량에 따른다. 서명국이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해당 결정 자체에 대한 항소와 별도로 항소할 수 없다. 다른 반도핑 기구의 치료용 면제(TUE) 결정 인정 범위는 제4조 제4항 및 치료용 면제에 관한 국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sup>73</sup> 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기관의 결정이 일부 측면에서는 코드에 부합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 FIAS, 기타 서명 기관 및 국가 연맹은 해당 결정을 코드의 원칙과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서명 기관이 코드에 부합하는 절차에서 선수의 체내에서 금지 물질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선수의 반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적용된 자격정지 기간이 코드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 FIAS 및 기타 모든 서명기관은 해당 반도핑 규정 위반 판정을 인정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국가 반도핑 기구는 제8조에 부합하는 청문회를 진행하여 코드에 규정된 더 긴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IAS 또는 기타 서명기관의 결정 이행, 혹은 제15.3조에 따른 결정 미이행은 제13조에 따라 항소 가능하다.

## 제 16 조 시효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 절차는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위반 사항이 통지되었거나 합리적인 통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작될 수 없다.

## 제 17 조 교육

FIAS는 코드 제18조 제2항 및 교육에 관한 국제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을 계획, 시행, 평가 및 촉진해야 한다.

FIAS는 선별된 대회(예: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 조건으로 선수들에게 참가 전 및/또는 참가 기간 중 교육 활동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참가 조건으로 교육 활동 이수가 요구되는 대회 목록은 FIAS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선수가 FIAS의 요청에 따라 교육 활동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FIAS의 징계 규정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단, 해당 미이행 사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FIAS에 제출하고 FIAS가 사례별로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18 조 국가 연맹의 추가 역할 및 책임

18.1 모든 국가 연맹 및 그 회원들은 코드, 국제 기준 및 본 반도핑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국가 연맹 및 기타 구성원은 본 반도핑 규정 서문("본 반도핑 규정의 적용 범위"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FIAS가 선수(국가대표 선수 포함) 및 기타 반도핑 권한 하에 있는 개인에 대해 본 반도핑 규정(검증 수행 포함)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정책, 규정 및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

18.2 각 국가 연맹은 본 반도핑 규정을 직접 또는 참조를 통해 해당 연맹의 관리 문서, 정관 및/또는 규정에 통합하여 회원에게 구속력을 갖는 스포츠 규칙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연맹은 자체적으로 선수(국가대표 선수 포함) 및 해당 연맹의 반도핑 권한 하에 있는 기타 인원에 대해 본 규정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8.3 본 반도핑 규정을 채택하고 이를 관리 규정 및 스포츠 규칙에 편입함으로써, 국가 연맹은 해당 기능에 있어 FIAS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가 연맹은 본 반도핑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권한 하에 있는 개인에 대한 제재 부과 결정 포함)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이행해야 한다.

- 18.4 모든 국가 연맹은 다음을 포함하여 코드, 국제 기준 및 본 반도핑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 FIAS의 문서화된 권한 하에서만 검사를 수행하고,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자국의 국가 반도핑 기구 또는 기타 시료 채취 권한 기관을 활용할 것
  - (ii) 코드 제5.2.1조에 따라 자국 내 국가 반도핑 기구의 권한을 인정하고,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가 해당 종목의 국가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적절히 지원할 것
  - (iii) 제6.1조에 따라 WADA 인증 또는 WADA 승인 실험실을 사용하여 수집된 모든 샘플을 분석할 것 및
  - (iv) 국가 연맹이 발견한 국가 수준의 반도핑 규정 위반 사건이 제8.1조 및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상 독립적인 심판 패널에 의해 심판되도록 보장할 것.
- 18.5 모든 국가 연맹은 국가 연맹 또는 그 회원 기관이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활동에 참가하거나 준비 중인 모든 선수 및 해당 선수와 관련된 모든 선수 지원 인력이 본 반도핑 규칙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고, 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반도핑 기구의 결과 관리 권한에 복종하는 것을 참가 조건으로 규정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 18.6 모든 국가 연맹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시사하거나 관련된 모든 정보를 FIAS 및 해당 국가 반도핑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 권한을 가진 모든 반도핑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 18.7 모든 국가 연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선수 지원 인원이 FIAS 또는 해당 국가 연맹의 관할 하에 있는 선수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18.8 모든 국가 연맹은 해당 국가 반도핑 기관과 협력하여 반도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 19 조 FIAS의 추가 역할 및 책임**

- 19.1 국제 연맹에 대한 규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 외에도, FIAS는 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FIAS의 규정 및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WADA에 보고해야 한다.

19.2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코드 제20.3.4조에 부합하여,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FIAS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직원 및 위임된 제3자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FIAS가 제공하는 서식에 서명하여,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코드에 부합하는 개인으로서 본 반도핑 규칙에 구속됨에 동의해야 한다.

19.3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코드 제20.3.5조에 따라, 도핑 통제에 관여하는 모든 FIAS 직원(승인된 반도핑 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 제외)은 FIAS가 제공하는 진술서에 서명하여 자신이 잠정적 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거나 자격 정지 기간을 이행 중이 아니며, 지난 6년 이내에 코드 준수 규칙이 적용되었을 경우 반도핑 규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직접적·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 **제 20 조 선수의 추가 역할 및 책임**

20.1 본 반도핑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0.2 시료 채취를 위해 항상 준비될 것.<sup>74</sup>

20.3 반도핑 맥락에서 섭취 및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

20.4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 사용 금지 의무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받은 의료 처치가 본 반도핑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책임질 것.

20.5 지난 10년 이내에 비서명 기관이 선수의 반도핑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결정을 FIAS 및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에 공개할 것.

20.6 반도핑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반도핑 기구와 협력할 것.

반도핑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반도핑 기구와의 완전한 협조를 거부하는 선수는 FIAS 징계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20.7 FIAS, 국가 연맹 또는 해당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타 반도핑 기구의 요청 시 선수 지원 인력의 신원을 공개할 것.

20.8 선수의 도핑 검사 담당관 또는 도핑 검사에 관여한 기타 인원에 대한 모욕적 행위는, 별도로 조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IAS 징계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

<sup>74</sup> 선수의 인권과 사생활을 충분히 고려하되, 정당한 반도핑 고려사항으로 인해 시료 채취가 심야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수들이 이 시간대에 저용량의 EPO를 사용하여 아침에는 검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 제 21 조 선수 지원 인원의 추가 역할 및 책임

21.1 본 반도핑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1.2 선수 검사 프로그램에 협력할 것.

21.3 선수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반도핑 의식을 함양할 것.

21.4 서명국 외 기관이 지난 10년 이내에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결정을 FIAS 및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에 공개할 것.

21.5 반도핑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반도핑 기구와 협력할 것.

선수 지원 인원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FIAS 징계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21.6 선수 지원 인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용 또는 소지는 FIAS 징계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21.7 선수 지원 인력이 도핑 검사 담당관 또는 도핑 검사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욕적 행위는, 다른 방식으로 방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FIAS 징계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 제 22 조 본 반도핑 규정에 적용되는 기타 인원의 추가 역할 및 책임

22.1 본 반도핑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2.2 비서명 기관이 지난 10년 이내에 본인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결정을 FIAS 및 해당 국가 반도핑 기구에 공개할 것.

22.3 반도핑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반도핑 기구와 협력할 것.

본 반도핑 규정에 적용되는 기타 인원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반도핑 기구와의 완전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FIAS 징계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22.4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을 것.

22.5 도핑 통제 담당자 또는 도핑 통제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방식으로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IAS의 징계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 제 23 조 규정 해석

- 23.1 규정의 공식 문서는 WADA가 관리하며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된다. 영어판과 프랑스어판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영어판이 우선한다.
- 23.2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설은 규정 해석에 활용된다.
- 23.3 본 규정은 서명국 또는 정부의 기존 법률이나 법령을 참조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 23.4 본 규정의 각 부분 및 조항에 사용된 제목은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본 규정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해당 조항의 문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23.5 본 규정 또는 국제 기준에서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역일을 의미한다.
- 23.6 본 규정은 서명국이 본 규정을 수락하고 자체 규칙에 시행하기 전까지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규정 시행 전의 반도핑 규정 위반은 규정 시행 후의 후속 위반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제재 결정 시 "첫 번째 위반" 또는 "두 번째 위반"으로 계속 간주된다.
- 23.7 세계 반도핑 프로그램의 목적, 범위 및 조직과 본 규정 및 부록 1 정의는 본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 제 24 조 최종 규정

- 24.1 본 반도핑 규칙에서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역일을 의미한다.
- 24.2 본 반도핑 규칙은 기존 법률이나 법령을 참조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 24.3 본 반도핑 규칙은 코드 및 국제 기준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코드 및 국제 기준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코드 및 국제 기준은 본 반도핑 규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상충 시 우선 적용된다.
- 24.4 서문 및 부록 1은 본 반도핑 규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 24.5 본 반도핑 규정 각 조항에 대한 주석은 본 규정의 해석에 활용되어야 한다.
- 24.6 본 반도핑 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하 "발효일")에 발효한다. 이는 FIAS의 기존 반도핑 규정을 폐지한다.

24.7 본 반도핑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4.7.1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반도핑 규정 위반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에 대한 제10조의 제재 결정 목적상 “첫 번째 위반” 또는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된다.

24.7.2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반도핑 규정 위반 사건 및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근거로 시행일 이후 제기된 모든 반도핑 규정 위반 사건은, 해당 위반이 발생한 시점에 유효했던 실제적 반도핑 규정이 적용되며, 단, 사건을 심리하는 패널이 사건 상황에 따라 “lex mitior(경미한 법률 적용)” 원칙이 적절히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목적상, 제10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중복 위반 시 고려될 수 있는 과거 위반 행위의 소급 적용 기간 및 제16조에 명시된 시효 기간은 절차적 규칙이지 실제적 규칙이 아니므로, 이 반도핑 규칙의 다른 모든 절차적 규칙과 함께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단, 제16조는 소멸시효 기간이 발효일까지 이미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급 적용된다).

24.7.3 발효일 이전의 제2.4조 소재지 불이행(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은 이월되어 만료 전까지 국제 결과 관리 기준에 따라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해당 위반 발생일로부터 12개월 후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4.7.4 발효일 이전에 도핑규칙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으나,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발효일 현재 자격정지 기간을 여전히 이행 중인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본 도핑방지규칙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 감경을 검토해 줄 것을 해당 도핑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 책임이 있는 국제스키연맹(FIAS) 또는 기타 도핑방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려진 결정은 제13.2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본 반도핑 규칙은 반도핑 규칙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4.7.5 제10.9.1조에 따른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시행일 이전에 유효한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본 반도핑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산정되었을 자격정지 기간을 적용한다.<sup>75</sup>

24.7.6 금지목록 및 금지목록에 포함된 물질 또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 문서의 변경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이 금지목록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에 근거하여 현재 자격정지 기간을 이행 중인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는, 해당 금지 물질 또는 방법이 금지 목록에서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 감경을 검토해 줄 것을 FIAS 또는 해당 도핑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 관리 책임을 가진 기타 반도핑 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

<sup>75</sup> 제24조 제7항 제5호에 명시된 상황(효력 발생일 이전에 도핑방지규칙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을 제외하고, 본 도핑방지규칙은 기존 위반 사항을 재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 부록 1 정의<sup>76</sup>

**ADAMS:** 반도핑 관리 및 운영 시스템(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은 데이터 보호 법률과 연계하여 이해관계자 및 WADA의 반도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 입력, 저장, 공유 및 보고를 위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이다.

**관리:**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공급, 감독, 용이하게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참여하는 행위. 단, 이 정의에는 진정한 합법적 치료 목적 또는 기타 허용 가능한 정당성을 위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선의의 의료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경기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은 금지 물질과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전체 상황이 그러한 금지 물질이 진정한 합법적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정적 분석 결과:** 국제 실험실 기준에 부합하여, WADA 인증 실험실 또는 기타 WADA 승인 실험실에서 제출한 보고서로, 검체에서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 또는 표지물질의 존재, 또는 금지 방법 사용의 증거를 확인한 것을 말한다.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 해당 국제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로 확인된 보고서를 말한다.

**가중 사유:**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관여하거나 행한 사정으로, 표준 제재보다 긴 자격정지 기간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러한 상황 및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다수의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다수 차례에 걸쳐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또는 다수의 기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일반인이 해당 도핑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기력 향상 효과를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 이상 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도핑규칙 위반의 적발 또는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 또는 방해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결과 관리 과정에서 조작 행위를 한 경우.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문에 기술된 상황 및 행위의 예시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기타 유사한 상황이나 행위 역시 더 긴 자격정지 기간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다.

**도핑방지 활동:** 도핑방지 교육 및 정보 제공, 검사 배분 계획 수립, 등록 검사 대상자 풀 유지 관리, 선수 생체 패스포트 관리, 검사 실시, 검체 분석 조직, 정보 수집 및 조사 수행, 치료용 예외(TUE) 신청 처리, 결과 관리, 부과된 제재 이행 모니터링 및

---

<sup>76</sup> 정의된 용어는 복수형 및 소유격 형태를 포함하며,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 용어도 포함한다.

집행, 그리고 규정 및/또는 국제 기준에 명시된 대로 반도핑 기구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타 모든 반도핑 관련 활동.

**도핑방지기관:** 도핑통제 절차의 일부를 개시,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책임이 있는 WADA 또는 서명기관. 여기에는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자체 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기타 주요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연맹 및 국가도핑방지기관이 포함된다.

**선수:** 국제 연맹이 정의한 국제 수준 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가 정의한 국가 수준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 반도핑 기구는 국제 수준 선수도 국가 수준 선수도 아닌 선수에게 반도핑 규칙을 적용할 재량권을 가지며, 이로써 해당 선수를 "선수"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 수준 선수도 국가 수준 선수도 아닌 선수와 관련하여, 반도핑 기구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 제한된 검사 또는 전혀 검사하지 않음; 금지 물질 전체 목록보다 적은 항목에 대한 샘플 분석; 제한된 소재 정보 또는 소재 정보 미요구; 사전 TUE(치료용 예외) 미요구. 그러나 반도핑 기구가 검사 권한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선수 중 국제적 또는 국가적 수준 이하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제2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본 규약에 명시된 제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의 목적과 반도핑 정보 및 교육의 목적상, 본 규정을 수용하는 서명국, 정부 또는 기타 스포츠 기구의 권한 하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선수로 간주된다.<sup>77</sup>

**선수 생체 패스포트:**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 및 국제 실험실 기준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및 정리 프로그램 및 방법.

**선수 지원 인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 중인 선수를 지도, 치료 또는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스태프, 관계자, 의료진, 준의료진, 부모 또는 기타 모든 인원을 의미한다.

**시도:**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행위의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를 고의로 수행하는 것. 다만, 해당 시도가 제3자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해당 개인이 시도를 포기한 경우, 위반 시도 자체만을 근거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정형 결과:** WADA 인증 실험실 또는 기타 WADA 승인 실험실에서 발행한 보고서로,

---

<sup>77</sup>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인은 다음 다섯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다: 1) 국제급 선수, 2) 국가급 선수, 3) 국제급 또는 국가급 선수는 아니나 국제연맹 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가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개인, 4) 레크리에이션 선수, 5) 국제 연맹이나 국가 도핑 방지 기구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개인. 모든 국제 및 국가 수준 선수는 본 규정의 도핑 방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및 국가 수준 스포츠의 정확한 정의는 국제 연맹 및 국가 도핑 방지 기구의 도핑 방지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불리한 분석 결과로 확정되기 전에 국제 실험실 기준 또는 관련 기술 문서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비정형 패스포트 결과:** 해당 국제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정형 패스포트 결과로 분류된 보고서를 말한다.

**CAS:** 스포츠 중재 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코드:** 세계 반도핑 규정.

**경기:** 단일 레이스, 매치, 게임 또는 단일 스포츠 대회. 삼보의 맥락에서 경기는 메달 및/또는 상금이 수여될 수 있는 단일 대회 및/또는 시합으로, 해당 종목의 주관 기관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최신 FIAS 스포츠 및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

도핑규칙 위반의 결과("결과"):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의 도핑규칙 위반은 다음 하나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 실격은 특정 경기 또는 이벤트에서의 선수의 결과가 무효화되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메달, 점수 및 상금 몰수 포함)를 의미한다; (b) 자격 정지란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인해 제10.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어떠한 경기나 기타 활동 또는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c) 잠정적 자격 정지란 선수 또는 기타 인원이 제8조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떠한 경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됨을 의미한다; (d) 재정적 결과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되거나 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재정적 제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e) 공개란 제14조에 따라 사전 통지 권리가 있는 자를 넘어 일반 대중 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된 제품:** 제품 라벨이나 합리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금지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한다.

**판정 기준치:** 국제 실험실 기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시료 내 기준 물질의 분석 결과 값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정적 분석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값을 의미한다.

**위임된 제3자:** FIAS가 도핑 통제 또는 반도핑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위임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FIAS를 위해 시료 채취 또는 기타 도핑 통제 서비스나 반도핑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제3자 또는 기타 반도핑 기구, 또는 FIAS를 위해 도핑 통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독립 계약자(예: 비정규직 도핑 통제관 또는 보호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의에는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격:** 상기 '반(0)도핑 규정 위반의 결과' 참조.

**도핑 통제:** 검사 배분 계획 수립부터 최종 항소 처리 및 결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와 절차(그 사이의 모든 단계 및 절차 포함). 여기에는 검사, 조사, 소재지 보고,

치료용 예외(TUE), 샘플 채취 및 처리, 실험실 분석, 결과 관리, 제10.14조(자격 정지 또는 잠정적 자격 정지 기간 중 지위) 위반 관련 조사 또는 절차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보호하며, 고의적·비고의적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관 함양 및 행동 양식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

**대회:** 단일 주관 기관 하에 최근 FIAS 스포츠 및 조직 규정(예: 종합 스포츠 대회, FIAS 세계 선수권 대회, 대륙 선수권 대회, 월드컵, A-B 등급 국제 토너먼트, 그랑프리)을 준수하며 함께 진행되는 개별 경기들의 연속체.

**대회 기간:** 대회 주관 기관이 정한 대회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FIAS가 주관 기관인 대회의 경우, 대회 기간은 대회 첫 경기 시작 12시간 전부터 대회 마지막 경기 종료 및 해당 경기와 관련된 샘플 채취 절차 완료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대회 장소:** 대회 주관 기관이 지정한 장소

**과실:** 과실이란 특정 상황에 적합한 의무 위반 또는 주의 소홀을 의미한다.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예를 들어,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경험,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보호 대상자인지 여부, 장애와 같은 특별한 고려 사항, 선수가 인지했어야 할 위험의 정도, 그리고 선수가 인지했어야 할 위험 수준과 관련하여 선수가 행사한 주의 및 조사 수준 등이 포함된다.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상황은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서 벗어난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선수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선수가 막대한 금액을 벌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나, 선수의 경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스포츠 일정의 시기는 제10.6.1조 또는 제10.6.2조에 따른 자격 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데 고려될 관련 요소가 아니다.<sup>78</sup>

**재정적 결과:** 상기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의 결과 참조.

**경기 중:**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 전날 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 종료 시점 및 해당 경기와 관련된 샘플 채취 절차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독립 관찰자 프로그램:** WADA의 감독 하에 특정 대회 전 또는 도중 도핑 통제 과정을 관찰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WADA의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찰 결과를 보고하는 관찰자 및/또는 감사관 팀.

---

<sup>78</sup> 선수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실이 고려되는 모든 조항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10.6.2조 하에서는 과실 정도를 평가한 결과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제재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

**개인 종목:** 팀 종목이 아닌 모든 종목.

**자격 정지:** 상기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의 결과 참조.

**기관적 독립성:** 항소 심의 패널은 결과 관리 책임이 있는 반도핑 기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 관리 책임이 있는 반도핑 기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운영되거나, 연결되거나,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연맹, 주요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기타 국제 스포츠 기구가 대회 운영 주체이거나 대회 기술 심판진을 임명하는 대회 또는 경기.

**국제급 선수:** 각 국제연맹이 정의한 바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로,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삼보 종목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선수는 본 반도핑 규정 서문의 적용 범위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sup>79</sup>

**국제 표준:** 코드 지원을 위해 WADA가 채택한 표준. 국제 표준(다른 대체 표준, 관행 또는 절차와 대비)에 대한 준수는 해당 국제 표준이 다루는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국제 표준에는 해당 국제 표준에 따라 발행된 모든 기술 문서가 포함된다.

**주요 대회 조직:** 대륙별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및 기타 국제 복합 스포츠 기구로서 대륙별, 지역별 또는 기타 국제 대회의 주관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지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화합물군 또는 생물학적 변수.

**대사산물:** 생체 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된 모든 물질.

**최소 보고 수준:**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 또는 마커의 시료 내 추정 농도로, 이 수준 미만일 경우 WADA 인증 실험실은 해당 시료를 부정적 분석 결과로 보고해서는 안 됨.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자연인 (18)세 미만인 자연인.

**국가 반도핑 기구:** 각국이 반도핑 규칙을 채택 및 시행하고, 시료 채취를 지시하며, 검사 결과를 관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심의를 수행할 주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관할 공공 기관이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

<sup>79</sup>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부합하여, FIAS는 선수들을 국제적 수준의 선수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할 기준(예: 랭킹, 특정 국제 대회 참가, 라이선스 유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공개하여 선수들이 언제 국제급 선수로 분류되는지 신속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제 대회 참가가 기준에 포함된다면 국제 연맹은 해당 국제 대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 또는 그 지명 기관이 된다.

**국내 대회:** 국제 대회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선수가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 또는 경기.

**국가 삼보 연맹:** FIAS의 회원국 또는 지역 단체로서, FIAS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FIAS 스포츠를 관장하는 단체로 인정하는 기관.

**국가 수준 선수:**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부합하여 각 국가 반도핑 기구가 정의한 국가 수준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국가 올림픽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직. 국가 올림픽 위원회라는 용어는 국가 스포츠 연맹이 반도핑 분야에서 전형적인 국가 올림픽 위원회 책임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스포츠 연맹도 포함한다.

**과실 또는 태만 없음:**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투여받았거나 기타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으며,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합리적으로 알거나 의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1조 위반에 대해서는 선수가 금지 물질이 자신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 없음:**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실 또는 태만 없음의 기준을 감안할 때, 어떠한 과실 또는 태만도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보호 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1조 위반에 대해서는 선수가 금지 물질이 자신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운영상 독립성:** 이는 (1) 결과 관리 또는 그 계열사(예: 회원 연맹 또는 연합)를 담당하는 반도핑 기구의 이사회 구성원, 직원, 위원회 구성원, 자문위원 및 관계자, 그리고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사전 심판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해당 반도핑 기구의 청문 패널(결과 관리를 담당하는)의 구성원 및/또는 서기로 임명될 수 없으며, (2) 청문 패널은 (해당 서기가 심의 과정 및/또는 결정문 작성에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청문 패널의 심의 과정 및/또는 결정문 작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해당 서기가 심의 과정 및/또는 결정문 작성에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 결과 관리 책임을 지는 해당 반도핑 기구의 청문 패널 구성원 및 서기로 임명될 수 없으며, (2) 청문 패널은 반도핑 기구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청문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목적은 청문 패널 구성원 또는 청문 패널의 결정에 관여하는 개인이 사건 조사 또는 사건 진행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경기 외 기간:** 경기 기간이 아닌 모든 기간.

**참가자:**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인원.

**개인:** 자연인, 단체 또는 기타 실체.

**소지:** 실제 물리적 소지 또는 추정적 소지(해당 개인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또는 금지 물질이나 금지 방법이 존재하는 장소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거나 통제할 의도를 가진 경우에만 인정됨); 단, 해당 인물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또는 금지 물질이나 금지 방법이 존재하는 장소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해당 인물이 금지 물질이나 금지 방법의 존재를 알고 통제 의도를 가진 경우에만 추정적 소유권이 인정된다. 단, 해당 개인이 반도핑 규칙 위반을 저질렀다는 어떠한 통지도 받기 전에, 해당 개인이 소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반도핑 기구에 명시적으로 소유를 포기했음을 선언한 경우에는 소유만으로 반도핑 규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본 정의의 다른 내용과 상충되더라도,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구매(전자적 수단 등을 통한 구매 포함)는 구매한 개인에 의한 소지로 간주된다.<sup>80</sup>

**금지 목록:**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을 명시한 목록.

**금지 방법:** 금지 목록에 그렇게 기술된 모든 방법.

**금지 물질:** 금지 목록에 그렇게 기술된 모든 물질 또는 물질군.

**보호 대상자:** 반도핑 규정 위반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 또는 기타 자연인: (i) 16세 미만인 자; (ii) 만 18세 미만이면서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개 부문 국제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 자; 또는 (iii) 연령 외 사유로 해당 국가 법률상 법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sup>81</sup>

**잠정 심문:** 제7.4.3조 목적상, 제8조에 따른 심문 전에 진행되는 신속한 축약 심문으로, 선수에게 서면 또는 구두 형태로 통지 및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sup>82</sup>

---

<sup>80</sup> 이 정의에 따르면, 선수의 차량에서 발견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선수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FIAS는 선수가 차량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스테로이드의 존재를 알고 통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수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정용 약장 안에서 발견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경우, FIAS는 선수가 해당 약장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제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금지 물질 구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소지가 성립되며, 예를 들어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수령했거나 제3자 주소로 발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up>81</sup> 규정집은 특정 연령 또는 지적 능력 미만의 선수나 기타 인물이 규정집에 명시된 금지 행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대상자를 다른 선수나 인물과 달리 취급한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로 인해 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서화된 패럴림픽 선수가 이에 해당한다. “오픈 부문”이라는 용어는 주니어 또는 연령대 부문으로 제한된 경기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sup>82</sup> 임시 청문회는 사건 사실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예비 절차에 불과하다.

**잠정적 자격 정지:** 상기 도핑 규정 위반의 결과 참조.

**공개적 공개:** 상기 도핑 규정 위반의 결과 참조.

**레크리에이션 선수:** 관련 국가 반도핑 기구(NADO)에 의해 그렇게 정의된 자연인. 단, 이 용어는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르기 전 5년 이내에 국제 수준 선수(각 국제 연맹이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정의한 바에 따름) 또는 국가 수준 선수 (각 국가 반도핑 기구가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정의한 바에 따름), 공개 부문에서 국제 대회에 어느 국가를 대표하여 참가한 적이 있거나, 어느 국제 연맹 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가 유지하는 등록 검사 대상자 풀 또는 기타 소재 정보 풀에 포함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sup>83</sup>

**지역 반도핑 기구:** 회원국들이 지정하여 국가 반도핑 프로그램의 위임된 영역(반도핑 규칙 채택 및 시행, 샘플 계획 및 수집, 결과 관리, TUE 심사, 청문회 진행, 지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을 조정 및 관리하는 지역 기관.

**등록 검사 대상자 풀:** 국제연맹이 국제 수준에서, 국가 반도핑 기구가 국가 수준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최우선 순위 선수 풀로, 해당 국제연맹 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의 검사 배분 계획의 일환으로 집중적인 경기 중 및 경기 외 검사를 받게 되며, 따라서 제5.5조 및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따라 소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과 관리:** 국제 결과 관리 기준 제5조에 따른 통보 시점(또는 특정 사례(예: 비정형 발견, 선수 생체 패스포트, 소재 정보 미제출)의 경우 해당 기준 제5조에 명시된 사전 통보 단계)부터 혐의 제기 시점까지, 그리고 1심 또는 항소심 청문 절차 종료 시점까지의 최종 결론 도출 과정을 포괄하는 절차 (항소가 제기된 경우).

**시료 또는 검체:** 도핑 통제를 목적으로 채취된 모든 생물학적 물질.<sup>84</sup>

**서명기관:** 규정 제23조에 따라 규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동의한 기관.

**지정 방법:** 제4.2.2조 참조.

**지정 물질:** 제4.2.2조 참조.

**무과실 책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반도핑 기관이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고의적 사용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

임시 심문 후에도 선수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후속 정식 심문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반면, 제7.4.3조에서 사용하는 "신속 심문"이란 신속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사건 실체에 관한 정식 심문을 의미한다.

<sup>83</sup> "오픈 부문"이라는 용어는 주니어 또는 연령대 부문으로 제한된 경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sup>84</sup> 혈액 샘플 채취가 특정 종교적·문화적 집단의 교리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규정.

**남용 물질:** 제4.2.3조 참조.

**중대한 협력:** 제10.7.1조의 목적상 중대한 협력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서명된 서면 진술서 또는 녹취된 인터뷰를 통해 제10.7.1.1조에 명시된 도핑방지규칙 위반 또는 기타 절차와 관련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2) 해당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건 또는 사안의 조사 및 심리에 완전히 협력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반도핑 기구 또는 심리 패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에서 증언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개시된 사건 또는 절차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사건 또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사건 또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어야 한다.

**조작:** 도핑 통제 절차를 훼손하는 고의적 행위로서, 금지된 방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조작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검체 채취를 방해하는 행위, 검체 분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반(□)도핑 기구 또는 치료용 예외(TUE) 위원회 또는 심판 패널에 제출된 문서 위조, 증인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행위, 결과 관리 또는 제재 부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도핑 기구 또는 심판 기관에 대한 기타 사기 행위, 그리고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기타 유사한 고의적 간섭 또는 간섭 시도.<sup>85</sup>

**표적 검사:** 국제 검사 및 조사 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특정 선수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행위.

**팀 스포츠:** 경기 중 선수 교체가 허용되는 스포츠.

**기술 문서:** 국제 기준에 명시된 특정 도핑 방지 주제에 대한 필수 기술적 요건을 포함하여 WADA가 수시로 채택 및 발간하는 문서.

**검사:** 검사 배분 계획, 샘플 채취, 샘플 처리, 실험실로의 샘플 운송을 포함하는 도핑 통제 과정의 일부.

**검사 대상자 풀:** 등록 검사 대상자 풀 아래 단계로, 경기 외 기간에 선수를 찾아

---

<sup>85</sup> 예를 들어, 본 조항은 검사 중 도핑 통제 양식의 식별 번호 변경, B 시료 분석 시 B 병 파손, 이물질 첨가로 시료 변조, 도핑 통제 과정에서 증언 또는 정보를 제공한 증인 또는 잠재적 증인에 대한 협박 또는 협박 시도 등을 금지한다. 조작에는 결과 관리 과정 중 발생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제10.9.3.3조 참조. 다만,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방어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는 조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도핑 검사 담당자 또는 도핑 검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그 자체로는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는 스포츠 단체의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부 소재 정보가 필요한 선수들을 포함한다.

**치료용 면제(TUE):** 치료용 면제는 의학적 상태가 있는 선수가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제4.4조 및 치료용 면제에 관한 국제 기준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밀매:** 선수, 선수 지원인 또는 반도핑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개인이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운송, 발송, 전달 또는 유통(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소지)하는 행위(물리적 또는 전자적 기타 수단 포함). 단, 본 정의에는 진정한 합법적 치료 목적 또는 기타 허용 가능한 정당성을 위한 금지 물질 사용과 관련된 선의의 의료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경기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은 금지 물질과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전체 상황이 해당 금지 물질이 진정한 합법적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네스코 협약:**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스포츠 도핑 방지 국제 협약 및 협약 당사국과 스포츠 도핑 방지 국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개정안을 포함한다.

**사용:**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어떠한 수단을 통한 이용, 적용, 섭취, 주입 또는 소비.

**WADA:** 세계 반도핑 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권리 침해 없는 합의:** 제10.7.1.1조 및 제10.8.2조의 목적상, 도핑 방지 기구와 선수 또는 기타 개인 간에 체결된 서면 합의로서,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정해진 시간 제한 하에 도핑 방지 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중대한 협력 합의 또는 사건 해결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정 상황에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제공한 정보는 규정 하의 결과 관리 절차에서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해 반도핑 기구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특정 상황에서 반도핑 기구가 제공한 정보는 규정 하의 결과 관리 절차에서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이 반도핑 기구에 대해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서면 합의. 이러한 합의는 반도핑 기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의서에 명시된 특정 시간 제한적 상황 이외의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